醫史學 제10권 제1호(통권 제18호) 2001년 6월
Korean J Med Hist 10 : 23 – 59, June 2001
ISSN 1225 – 505X
©大韓醫史學會

조선후기 흡연인구의 확대과정과 흡연문화의 형성

신규환*· 서홍관*

1. 문제의 제기

담배는 16세기 중엽 유럽인들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면서, 1세기만에 전 세계에 파급된 기록적인 상품작물이다. 그 후 서구에서는 담배의 식민지 경영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초기적 자본축적을 진행해 나갔고, 동아시아에서도 상품경제의 발전과 함께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담배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류의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흡연 찬반논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구미 각국에서는 금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흡연인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며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높은 흡연율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연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1)]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담배산업과 보건 측면에서의 흡연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품경제가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논쟁과정을 거쳐왔다. 따라서 오늘날의 담배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 그것의 발전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담배문제를 역사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예컨대 담배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파악할 경우, 국산담배의 애용 또는 국산담배의 수출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담배문제를 분석하려

* 인제의대 의사학 및 의료윤리학 교실.

1) 1997년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의 흡연율은 한국(68.2%/6.7%), 중국(61.0%/7.0%), 일본(59.0%/14.8%)로 남성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각각 1위, 7위,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흡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과 건강. 2000 : 43쪽). 이는 미국(27.6%/22.1%, 1997년)이나 영국(29%/28%, 1996년)등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The American Cancer Society, Inc. Atlanta, Georgia 2000 : 204, 352쪽).

는 시도는 담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배도입 초기인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조선후기(朝鮮後期) 담배에 관한 연구 역시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조선후기 상품작물의 재배와 자본주의적 발전, 식민지배로 인한 근대적 발전과정의 왜곡을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 이러한 연구경향은 조선후기 상품경제의 발전을 부인하는 식민사학의 잔재를 극복하고, 일제가 식민지배를 위한 주요 재정적 원천으로서 자신들의 담배 전매정책을 미화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사적 관점에서는 담배를 민족자본과 제국주의의 대결로만 묘사하여, 담배문제를 근대산업의 발전과 왜곡이라는 측면에만 한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는 담배의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이나 담배의 재배면적의 확대나 제조기술 등의 발전 등과 같은 산업적 발전과정은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일상생활 수준에서 일반민중에게 담배가 무엇이었고, 담배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흡연인구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금연문제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결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상생활사에 대한 관심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사적인 연구가 주목을 끈다.[3]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담배를 통한 사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대중적 취향에 맞춘 개설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담배 도입 초기부터 담배의 폐해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농민경제력 향상에 기여했다"거나,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었다", "서민의 노동의욕을 북돋웠다"는 식으로 보건위생측면의 논의를 결여한 채 담배를 편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사회사적인 시각에서 담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없으나 담배에 관한 국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담배의 도입시기와 도입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논쟁이 분분한 것은 명확한 문헌적 근거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아시아 삼국의 도입시기가 비슷하고 도입과정에서 각국이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담배의 초기적 인식과 관련된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삼국의 도입시기와 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흡연인구의 확대시기와 그 원인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18세기에 들어와 흡연인구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그 시기에 그린 풍속화에서 담배와 관련된 장면이 많이 포착된다는 점, 18세기에 들어서 경작면적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흡연인구의 확대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 기존에는 주로 상품작물로서의 담

2) 朴容玉. 南草에 관한 硏究. 歷史敎育 1968 ; 9 ; 김용섭. 朝鮮後期의 經營型 富農과 商業的 農業. 朝鮮後期農業史硏究Ⅱ. 서울 ; 일조각, 1971 ; 이윤갑. 18·19세기의 경북지방의 농업변동. 韓國史硏究 1986 ; 53 ; 홍희유. 17세기 이후 담배재배업의 급속한 성장과 그 상품화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8 ; 3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연구사는 李永鶴. 韓國 近代 煙草業에 대한 硏究.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0. 8을 참고.

3) 李永鶴. 담배의 사회사 : 조선후기에서 일제시기까지. 역사비평 12. 1991. 2 ; 오종록. 담뱃대의 길이는 신분에 비례한다.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 사회·경제생활 이야기. 서울 ; 청년사, 1996.

배의 특성, 즉 담배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담배 도입 초기부터 이미 흡연인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담배가 도입 초기에는 약초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경제논리로서만 환원시킬 수 없다. 또한 흡연의 효능과 폐해에 대한 논쟁을 흡연에 대한 지지와 반대라는 대립관점에서 보지 않고, 중국의 흡연인식과 비교하면서 양생론(養生論)의 관점에서 이를 검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행했던 흡연의 효능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제시기 사학자 문일평(文一平: 1888－1939)은 담배로 인해 생겨난 습속과 담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총괄하여 '담배문화'라고 규정하고 이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조선의 '담배문화'의 특징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신분·성별·연령에 따라 차별이 엄격한 '담배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점과[4] 국가적 차원에서 청이나 일본과 달리 금연령(禁烟令)이 반포되지 않는 등 흡연문제가 관대하게 다루어졌다[5]는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우선, 그가 주장하는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이 엄격한 '담배문화'는 단순히 흡연인구가 확대된 결과로서만 설명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화란 "인간행동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하나의 상징체계"로서 행위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상기해 두고 싶다.[6] 즉 담배문화를 단순히 흡연인구가 확대된 결과가 아니라 흡연인구의 안정적인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행위규범의 형성과정과 재생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흡연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제기는, 흡연문화의 형성에 있어 국가권력이 배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권력은 그 속성상 제례와 신화 같은 상징체계를 새롭게 고안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 본고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금연령은 조선에서 수 차례 반포된 바 있다.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반포된 금연령이 청과는 달리 엄격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원인도 규명되어야겠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금연령의 성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설명방식을 통해 흡연인구의 확대과정을 보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담배가 차지했던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담배의 도입과 흡연인구의 확대

담배의 기원과 도입과정에 관한 한, 1492년

4) 文一平. 담배考. 湖岩全集 卷2. 京城 ;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5) 李永鶴은 일본의 禁烟令을 말하면서도, 조선의 禁烟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18세기 초·중엽에 금연주장이 많았다는 점만을 지적했다. 李永鶴. 같은 논문. 1990 : 59－60쪽.
6) 이러한 주장은 기어츠의 문화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문화란 "인간의 경험을 해석하고 인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의미체계"라고 규정한다.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 Basic Books, Inc., 1973 : 144－145쪽.
7) 홉스봄은 19세기 국민국가 형성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라는 두가지 방면에서 전통이 고안되는 방식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데 있어 사회적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ric Hobsbawm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3 : 263－264쪽.

콜럼부스(Christopher Columbus : 1446 – 1506)의 담배 도입설부터 동아시아 도입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설이 없고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두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가급적 명시적인 근거를 좇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담배는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의 샤먼이 주술용과 약용으로 일찍부터 사용해온 것이었다.[8] 유럽인이 처음 담배를 접했던 것은 콜럼부스가 1492년 10월 15일 원주민으로부터 담뱃잎을 선물 받았다는 것과 한달 후 그의 선원들이 쿠바 내지에서 돌아오면서 인디언들이 담배 피우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통한 것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일반인들에게는 담배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9] 담배가 유럽사회에 인식된 것은 1550년 스페인의 필리페 2세가 신대륙의 스페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의약용으로 담배를 주목하면서부터였다. 이 때까지도 유럽전역에 바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스페인이 서인도 제도의 식민지 담배상품을 독점·제한하면서 일부 계층에만 소비되었다. 그러다가 1561년 프랑스의 외교관 쟝 니코(Jean Nicot: 1530-1600) 등이 현재 흡연용으로 가장 인기있는 남미산 니코티아나 타바쿰(Nicotiana tabacum)이라는 품종을 확산시켰는데, 1586년 프랑스의 식물학자들이 그의 업적을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담배의 학명을 정했던 것이다. 이 밖의 흡연용 품종으로는 북미산 니코티아나 루스티카(Nicotia- na rustica)라는 것이 있는데, 러시아, 파키스탄, 북아프리카, 인도 등 일부에서만 재배되며 니코티아나 타바쿰에 비해 니코틴 함량이 많아 독하고 성장이 더딘 특성이 있다.[10] 니코티아나 타바쿰은 스페인과 프랑스를 거쳐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에 전해졌고, 포르투갈은 아시아로 담배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11] 그 후 유럽에서는 폭발적인 담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대륙에서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여 담배 플렌테이션을 경영했으며, 서구세계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축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담배가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전래된 시기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걸쳐 있는데, 현재 문헌상으로 검증 가능한 연대는 삼국 모두 17세기초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에 가장 먼저 전래되었는데, 담배가 전래된 시기는 1570년 토쿠가와(德川) 바쿠후(幕府)가 나가사키(長崎)에서 포르투갈 상인의 무역을 허가한 이래 1573년부터 1605년 사이에 전해졌다는 주장이 많다.[12] 최근 1602년 성 프란시스코회 수도사(修道士)의 보고서가 발견되었는데, 문헌적으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8) Jordan Goodman. Tobacco in history : the cultures of dependence.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3 : 제2장 "Food of Spirits : Shamanism, healing and tobacco in Amerindian cultures"를 참고.

9) Jordan Goodman. 같은 책. 1993 : 37쪽. 일반적으로 담배의 유럽 도입을 콜럼부스와 연결짓는데, 콜럼부스가 담뱃잎과 씨앗을 유럽에 전했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콜럼부스의 담배관련 보고가 공식 출판되었던 것은 1571년 베네치아에서였다. 鈴木達也. 喫煙傳來史の研究. 京都 ; 思文閣出版, 1999 : 160 – 170쪽.

10) B.C. Akehurst. Tobacco. Harlow ; Longmans, 1981 : 34쪽.

11) Carl Avery Werner. Tobaccoland : a book about tobacco ; its history, legends, literature, cultivation, social and hygienic influences, commercial development, industrial processes and governmental regulation. New York ; The Tobacco Leaf Publishing Company, 1922 : 제3장 "Introduction of Tobacco into Europe"을 참고.

12) 古島敏雄. 日本農業技術史. 東京 ; 時潮社, 1975 : 359 – 366쪽.

"1601년 6월 29일 토쿠가와 바쿠후에 담배씨를 헌상했다"는 기록이 가장 명시적인 근거가 된다.[13] 이후 1608년을 전후하여 수 차례 금연령이 공포될 정도로 초기부터 흡연이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담배의 도입시기가 대체로 명대(明代) 션쫑(神宗) 완리띠(萬曆帝 : 1573－1619) 시기 푸졔(福建) 상인들이 필리핀의 뤼쑹(呂宋 : Luson) 섬을 통해 푸졔 지역에 들여왔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14] 대부분의 주장이 완리(萬曆) 말기설 즉 17세기초라는 주장을 따르고 있는데, 실제 문헌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도 완리 41년(1613년) 야오뤼(姚旅)의 『露書』에 나오는 내용이며,[15] 여기에서 언급되듯이 푸졔 쟝쥬(州)지방을 경유하여 광똥(廣東)과 쟝쑤(江蘇)·져쟝(浙江)지역에 전해졌다는 것이 가장 이른 경로가 된다.

17세기초 조선을 통한 만주로의 담배 도입 가능성은 『承政院日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636년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포로석방을 위한 속환무역(贖還貿易) 등이 행해지는 등 담배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16]과 이후 왜지삼(倭枝三)이라는 일본산 고급 담배가 조선을 경유하여 지속적으로 중국에 유입되는 형태로 보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담배 전래의 최초 도입시기가 논쟁점으로 남게 된다해도,[17] 적어도 17세기 전반 푸졔 지역을 통한 남방 경로와 조선을 통한 북방 경로라는 양면으로의 도입 경로가 존재했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보인다.[18]

---

13) 鈴木達也. 같은 책. 1999 : 13－16쪽.

14) 16세기 중반 도입설로는 汪銀生. 烟草五百年 : 吸煙與健康大事記. 2001 ; 吳益·張占平. 中國烟草大事記. 2001 ; 張維 著. 金喆熙 譯. 谿谷漫筆. 서울 ; 乙酉文化社, 1974 : 114. 汪銀生은 萬曆3년(1575년)이라고 주장하고, 張維도 1635년 100년 전에 복건에 도입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汪銀生과 吳益·張占平의 주장은 (http://www.tobaccoinfo.com.cn/ycls/)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담배도입이 17세기초라는 주장은 (Berthold Laufer. Tobacco and its use in Asia. Chicago ;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1924 : 2쪽 ; Li, Hsien－wei. The Tobacco in China. Tientsin ; Hautes Êtudes, 1934 : 4쪽 ; 天野元之助. 中國農業經濟論 第3卷. 東京 ; 龍溪書舍, 1978 : 92쪽)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이들 역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5) 姚旅 撰. 露書 卷10. 錯篇(1613年). "여송국에서 나온 풀로 담바고라고 하고, 金絲 이라고도 한다. 한쪽에는 불을 붙이고 한쪽에는 입을 대서, 관을 통해 연기를 빨아들여 사람을 취하게 하는데, 氣를 막을 수 있다. 어떤 이가 州에 가져와 그 씨를 뿌렸는데, 지금은 呂宋보다 많으며, 그 나라에 들여가 팔고 있다. 지금 담바고는 또한 中에 있으며, 속칭 金絲 이라 불리며, 가지는 깃털모양이며, 찧고 즙을 내면 독이 있어 두슬충을 근절시킬 수 있다(呂宋國出一草, 曰淡巴菰, 一名曰 . 以火燒一頭, 以一頭向口, 煙氣從管中入喉, 能令人醉, 且可避 氣. 有人携 州種之, 今反多於呂宋, 載入其國 之. 淡巴菰, 今 中亦有之, 俗曰金絲 . 枝如 枝, 搗汁可毒頭蝨根昨)." 鈴木達也. 같은 책. 1999: 74쪽에서 재인용.

16) 朴容玉. 南草에 관한 硏究. 歷史敎育 1966 ; 9 : 69－70쪽.

17) 현재까지 16세기 중국 유입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조셉 니담이 『中國의 科學과 文明Ⅰ』(서울 ; 乙酉文化社, 1988 : 175쪽)에서 16세기 최고의 과학적 업적으로 칭송했던 리스쩐(李時珍:1518－1593)의 『本草綱目』 52권 속에서 제시된 金絲草라는 약초이다. 그런데 金絲草가 외국에서 들여왔다는 언급이 없고, 그 성질이 "苦寒無毒"이라고 하는 등 후대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18세기 후반 朝鮮에 알려진 金絲烟와 동일한 것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리스쩐의 金絲草에 관한 언급은 (李時珍. 本草綱目(全4卷). 卷2. 北京 ; 中國書店, 1988 : 「卷13 草部」 79－80쪽)을 참고.

18) 중국의 도입경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로설(吳益·張占平. 같은 글. 2001 ; 이 글은 북방경로가 16세기

조선에서의 담배의 도입시기와 도입과정에 대한 논쟁 역시 복잡한 양상이다. 대체로 16세기말에서 17세기초에 도입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6세기말 즉 임진왜란 때인 선조(宣祖：1567－1608)대에 조선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은 18세기 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19] 17세기초 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광해군(光海君:1608－1623) 무오년(戊午年：1618년)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이 역시 18세기 유학자들의 주장 중의 하나이다.[20]

담배의 조선으로의 도입과 관련하여 최초의 문헌기록은 1614년 당시 이수광(李 光:1563－1628)의 『芝峰類說』인데, 그는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은 담바고를 많이 심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담배는 적어도 1614년 이전에 조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1]

담배의 도입경로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유입되었다는 주장이 가장 많은데, 중국에서 도입되었다는 주장과 이 두 가지 경로 모두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22] 그런데 중국의 남방경로가 빨라야 1613년이고[23] 조선은 1614년 이미 담배를 많이 심고 있었기 때문에, 남방경로를 통해 조선에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4]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래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1619년에 풍기군수(豊基郡守)를 지낸 고상안(高尙顔:1553－1623)이 상주(尙州) 지방의 영농지침서로 삼기 위해 24절기의 농사일을 적어 놓은 『農家月令』에는 2월과 5월에 담배씨를 뿌린다는 언급이 있다.[25] 아울러 조선시대 대표적인 잡가 중의 하나인 「담바귀타령」은 동래, 울산에서 담배를 재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담배가 전래된 직후 영남지방에서 불리워진 것으로 보인다.[26]

중반이라고 주장한다), 동남아에서 해상을 통한 廣東으로의 경로가 추가된 세가지 경로설(吳 . 談烟草. 1959 ; 吳 의 주장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中國吸烟文化史. 2001. http://www.sinowing.com/ls_index/shgc_index/shgc2.htm), 인도지나 반도를 통해 육상으로 雲南으로의 경로가 추가된 네가지 경로설(岸本美緖. 東アジアの「近世」. 東京 ; 山川出版社, 1998：67쪽)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19) 대표적으로 李永玉, 白奎昌, 禹夏永 등을 들 수 있는데, 禹夏永은 중국도입설을 주장했다. 李永鶴. 같은 논문. 1990：13쪽.

20) 조선후기의 『紀年通考』『稗乘隨錄』『大東紀年』『芝陽漫錄』 등 많은 문헌에 보인다. 대표적인 예는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卷16. 「烟草辨證說」에 보인다. 李圭景 編著. 五洲衍文長箋散稿(上). 서울 ; 明文堂, 1982：494쪽.

21) 일제시기 文一平은 이 기사를 근거로 담배 도입은 1614년 이전이며, 그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日本과 다시 부산에서 互市를 열었던 1609년부터 『芝峰類說』이 저술된 1614년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文一平. 같은 글. 1939：396－397쪽.

22) 중국에서 도입되었다는 주장은 禹夏永이 『千一錄』卷8, 農家總攬 總攬終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며, 일본과 중국에서 모두 도입되었다는 주장은 『農政撮要』 第34章 論煙草耕作之法과 『朝鮮專賣史』 第1卷 第2章, 1936에서 제기되고 있다.

23) 『露書』의 연대가 1613년이 아니라 1622년이라는 주장도 있다. 鈴木達也. 같은 책. 1999：74쪽.

24) 더욱이 17세기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金絲烟이라는 담배는 남방 경로를 통해 18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朝鮮에 알려졌다. 朝鮮에서 이른바 西草로 불린 金絲烟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18세기 후반 柳得恭의 『京都雜志』이다.

25) 홍재걸, '農家月令'考. 東洋文化(영남대 동양문화연구소) 1968 ; 6·7호.

26) 성경린·장사훈 편. 조선의 민요. 서울 ; 국제음악민요사, 1949：232－236쪽. 李永鶴은 「담바귀타령」을 담배 도입 직후의 작품으로 간주한다. 李永鶴. 같은 논문. 1990：14쪽.

또, 담배의 어원상으로 보아도 일본에서 유래되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17세기초 조선에서는 주로 담바고(淡婆姑, 淡泊塊 등) 또는 남령초(南靈草)라 불렸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명칭이 덧붙여졌으나 일반적으로 남초(南草) 혹은 연초(烟草)로 통용되었다.[27] 담바고(혹은 담파고)라는 명칭은 Tobacco의 음역으로 담배 도입 초기 일본, 조선, 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연초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맨처음 번역되어 전해졌고,[28] 남령초, 남초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담배는 기본적으로 남쪽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남쪽이라 함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이며, 더 나아가면 일본 나가사키에 내항하던 포르투갈 상인들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의 담배는 17세기초 임진왜란 직후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17세기초에 동아시아에 도입되었던 담배는 일본 → 조선 → 청의 무역구조가 중심축을 이루면서 도입 초기부터 급속히 확대되어, 각국에서 금연령을 반포해야 할 정도였다. 담배가 도입된 이래 조선에서 얼마나 대중적으로 확대되었는지는 문헌적 증거 외에도 17세기 후반에서 18세에 유행했던 풍속화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희언(姜熙彦 : 1738－1792), 김홍도(金弘道 : 1745－1816), 신윤복(申潤福 : 1758－?), 김득신(金得臣 : 1754－1822) 등의 풍속화에서는 양반, 기생,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흡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4).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담배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흡연인구가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담배 도입 초기인 17세기 중반 이전의 많은 문헌들이 이를 지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17세기 중반인 효종(孝宗 : 1649－1659) 4년(1653년) 제주도에 표류했던 하멜(Hendrick Hamel : 1630－1692)이 14년 간 조선에서의 억류생활과 조선풍물을 기록한 『하멜표류기(1668년)』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현재 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성행하여 어린이들까지도 4·5세 때에 이미 이를 배우기 시작하며, 그래서 男女間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처음 담배를 가져왔을 때에 그들이 銀의 重量으로 이를 무역하였고, 그 이유로 남만국을 세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나라의 하나로 쳐다보게 되었다.[29]

이 사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7세기 중반에 이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가 대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7) 18세기는 烟草라는 한문표기가 한중일에서 보편적으로 쓰였다.

28) 일본에서 烟草라는 말은 1603년 『琉球往來』의 '烟草事'라는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鈴木達也. 같은 책. 1999 : 68－80쪽). 중국에서 烟草라는 명칭은 唐代 黃滔의 『景陽井賦』에서 "(태성이 무너졌는데 연초는 무리지어 꽃피고, 옛 우물은 고요한데 초목은 아름답구나)台城破兮煙草春, 舊井湛兮苔薪鮮"라는 것처럼, 唐宋 이래의 詩賦에서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의 煙草는 연기가 자욱할 정도의 무성한 풀, 즉 덩굴풀을 지칭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담배를 지칭하는 烟草는 1645년 『本草彙言』에서 처음 보인다(鈴木達也. 같은 책. 1999 : 73쪽)

29) 헨드릭 하멜 著. 李丙燾 譯. 蘭船濟州道難破記－附朝鮮國記－. 서울 ; 일조각, 1975 : 92쪽. 일반적으로 『하멜표류기』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번역본이 여럿 있으나 이병도 역주본이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다.

그림 1. 강희언. 사인시음(士人詩吟) : 士人들이 글, 그림, 무예를 경쟁하는 시리즈물인『士人三景圖帖』중의 하나이다. 6명의 士人이 시를 쓰고 책을 읽는 등 시를 짓는데 몰두 하고 있다. 장죽을 물고 있는 사람은 느긋해 보이고 뒷편에 서 있는 사람은 손으로 수염을 비비꼬는 모양이 시상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정병모 지음. 한국의 풍속화. 서울 : 한길아트, 2000 : 274쪽).

그림 2. 김홍도. 벼타작 : 웃옷을 벗고 타작에 몰두하고 있는 농민과 느긋하게 장죽을 물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김홍도의 해학과 비판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정병모 지음. 한국의 풍속화. 서울 : 한길아트, 2000 : 296쪽).

첫째, 가격 면에서 당시는 담배가격이 담배 1斤에 은 1냥 정도로 비싸서 일반 민중이 그를 구매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30] 그렇다면 흡연인구가 양반층에 제한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장유(張維 : 1587 – 1638)는『谿谷漫筆(1635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南靈草를 흡연하는 방법은 본디 日本에서 나왔다. 日本 사람은 淡泊塊라 하며, 그 풀은 남양 여러 나라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비로소 있었는데, 지금은 위로는 公卿으로부터 아래로는 가마 메는 하인과 꼴베는 牧童들까지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중략) 세상에 피우지 않는 자가 천 명 백 명 중에 겨우 한 사람 정도이다.[31]

30) 오종록. 담뱃대의 길이는 신분에 비례한다.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사회 · 경제생활 이야기 1. 서울 ; 청년사, 1996 : 263쪽. 오종록은 담배가격이 비쌌다는 점에서 하멜의 기술이 과장된 것으로 파악한다.

31) 張維 著. 金喆熙 譯. 谿谷漫筆. 서울 ; 乙酉文化社, 1974 : 274쪽. "南靈草吸煙之法本出日本, 日本人謂之

그림 3. 신윤복. 칼춤 : 관아에서 벼슬아치들이 칼춤을 감상하는 장면을 그렸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기생이 오른쪽의 동자를 쳐다보고 있고, 장죽을 지닌 동자 역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기생을 주요 소재로 삼았던 신윤복의 그림에는 담뱃대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정병모 지음. 한국의 풍속화. 서울 : 한길아트, 2000 : 331쪽).

그림 4. 김득신. 파적도(破寂圖) : 조용한 봄날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자 어미닭이 홰치며 놀라 다급히 쫓아가고 이를 본 툇마루에 있던 부부가 황급히 뛰어내려오는 장면을 그렸다. 긴 담뱃대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쫓는 주인은 탕건이 벗겨진 채 땅에 쓰러지려 하고 있고, 얼떨결에 주인을 붙잡으려는 처의 모습을 통해 김득신의 해학성과 독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정병모 지음. 한국의 풍속화. 서울 : 한길아트, 2000 : 365쪽 ; 그런데 정병모가 원용한 그림은 원본의 좌우가 바뀌었다.).

그는 하멜보다도 앞선 시기에 신분의 차별이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거의 피우지 않는 자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하멜이 관찰할 수 있었던 제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이송경로와 억류장소는 주로 호남의 곡창지역으로 17세기까지만 해도 그 지역은 담배의 주 생산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다. 17세기만 하더라도 담배 경작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흡연인구가 확대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시사점을 제공한다. 1638년 『仁祖實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이 풀은 1616－1617년 사이에 바다를 건너왔고, 그를 피우는 자가 성행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1621－1622년 이래로는 그것을 피우지 않는 자가 없었고, 손님을 대하면 번번이 茶와 술을 담배로 대신하기 때문에 혹은 烟茶 혹은 烟酒라고 하였고, 심지어 파종·채취하여 서로 교역하기에 이르렀다.[32]

淡泊塊, 言其草出自南洋諸國, 云我國自二十年前始有之今則上自公卿下至輩臺 牧無不服之. (중략) 世之不服者僅僅千百之一耳."

32) 仁祖實錄 卷37, 仁祖16年(1638年) 8月 4日 甲午. "此草自丙辰丁巳年間, 越海來, 人有服之者, 而不至於盛

5년 가까운 시기에 흡연인구가 갑작스럽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장유의 논조에 비하면,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이 기록 역시 17세기 전반에 이미 흡연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욱이 담배가 일찍부터 재배됨과 동시에 상품작물로서 활발한 교역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 4·5세의 어린아이가 담배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4·5세의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웠던 것일까? 이 점은 『熱河日記』에 "젖먹이들까지도 즐겨 피우지 않는 이가 없을뿐더러"[33] 라는 구절과 『仁祖實錄』에 "겨우 젖먹이를 면하면 횡죽을 피운다"[34]는 구절 등을 통해 볼 때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선 담뱃불이 필요한데, 어린아이가 스스로 기호품으로 인식하고 흡연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성인들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흡연의 효능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작용하였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35]

이처럼 흡연인구의 확대와 관련하여 17세기 전반의 적지 않은 기록들은 담배 도입 초기부터 흡연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신분, 연령, 나이 등의 차이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흡연인구의 급속한 확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금연논쟁은 바로 흡연인구의 확대를 배경으로 논의된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금연령 반포로 구체화되었고, 보건위생적 차원에서는 흡연의 효능과 폐해에 대한 논쟁을 가져왔다. 따라서 흡연인구의 확대원인으로서 우선 경제적 측면과 보건위생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흡연인구의 확대원인과 금연논쟁

1) 동아시아의 담배무역과 금연령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금연령은 日本에서 반포되었다. 최초의 금연령에 관한 내용은 1612년 마테우스 드 쿠로스(Matheus de Couros, S. J.)라는 포르투갈 선교사의 서한에서 찾아 볼 수 있다.[36] 이 서한에는 1608년 포르투갈 선교회 감독관인 프란시스코 파시오(Francisco Pacio)가 시간을 허비하고 肉慾을 자극한다는 종교적 이유로 선교회 자체에 내린 금연령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일본에서 흡연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 정부가 옥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옥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흡연으로 인한 실화가 문제가 되었다는 뜻인데, 1609년과 1615년에도 화재로 인해서 금연령이 실시되고 있었다.[37]

일본의 담배가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문제는 일찍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다. 광해군 14년(1622년)과 광해군 15년(1623년) 동래왜관(東萊倭館)에서 담배불로 인한 대규모 화재가 있었으며, 숙종(肅宗 : 1674－1720) 43년(1717년)에는 충청도 지역에도

行, 辛酉壬戌以來, 無人不服, 對客, 輒代茶飮, 或謂之烟茶, 或謂之烟酒, 至種採相交易."

33) 註 132)참고.

34) 註 137)참고.

35) 이 점은 3장 2절을 참고.

36) Michael Cooper, S. J. Rodorigues the Interpreter : An Early Jesuit in Japan and China. John Weatherhill, Inc., 1974 : 177－178쪽. 원문의 영역본은 鈴木達也. 같은 책. 1999 : 225－226쪽에서 참고할 수 있다.

37) 鈴木達也. 같은 책. 1999 : 「喫煙傳來史年表」29－30쪽 참고.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있어 금연령을 내린 바 있었다.[38]

담배가 17세기초에 조선을 통해 청에 전해졌고, 점차 담배는 조청무역(朝淸貿易)에서 중요한 수출품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해 가기 시작했다. 담배무역은 공식적인 조공무역(朝貢貿易)에서 사절단의 여비 정도로 약간 량만이 허용되고 있었는데, 청에서 크게 인기를 끌자 사무역 방면에서 점차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의 포로석방을 위한 속환무역, 몽고로부터 농경용 목우를 구입했던 무우(貿牛), 연경 사절단의 여비 등으로 담배가 금전을 대신하게 되었다.[39] 이를 계기로 담배무역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일반인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또한 담배의 상품적 가치가 인식되어 담배를 재배하려는 농가가 급증하였다. 담배 경작 면적의 확대는 흡연인구가 증가한 결과이기도 했으나 담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담배소비를 촉진하고 흡연인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조선과의 담배무역이 활기를 띠자 청은 중대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조청의 조공무역에서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은을 구입하여 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명을 아직 함락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 자금의 주요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은이 조선으로 계속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청은 이와 같이 은 유출을 막기 위해, 1634년 2월 이전 이미 금연령을 반포하여[40] 위반자는 죄질에 따라 사형까지 처하는 등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 "2월 戊申에 호부에 上諭를 내려 가로되, 이전에 禁烟令을 정하였고 그것을 심고 피우는 자에게 누차 되풀이하여 훈계하였는데도 근래에는 오히려 大臣들이 담배를 피우니 小民들이 따라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禁烟令을 해제하니 자급자족 하는 자에 한해서만 흡연을 인정해주고 변경에 나가 구매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41]"

청은 자급자족 차원의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담배 무역과 매매는 엄금하고자 했다. 이처럼 금연령의 발령 이유는 자국인의 보건상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 청 사이의 무역불균등을 막아보려는 조처였다. 조선측의 기록에서도 이점은 확인되는데, 청의 금연령의 배경을 담배가 "土産이 아니며, 財貨를 소모시킨다(非土産, 耗財貨)"[42]라고 지적하였다. 즉 담배는 공식적인 무역품목이 아니었음에도

38) 光海君日記. 卷 186. 光海君 15年(1623年) 2月 乙亥 ; 肅宗實錄. 卷59. 肅宗 43年(1717年) 3月 乙巳.

39) 朴容玉. 같은 글. 1966 : 67 – 68쪽.

40) 『仁祖實錄』이 1638년 淸의 禁烟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淸의 禁烟令이 1638년 이전이라는 주장(朴容玉. 같은 논문. 1968)이 있으나, 淸의 禁烟令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은 『十二朝東華錄』에 나오는 崇德 6年(1634年)과 天聰 9年(1635年)의 기사인데, 1634년 2월 기사에서 禁烟令을 그 이전에 반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蔣良騏 原纂. 王先謙 改修. 十二朝東華錄 6(天命, 天聰, 崇德朝). 上海 ; 大東書局, 발행시기 불명(연세대 소장본).

41) 蔣良騏 原纂. 王先謙 改修. 같은 책 : 崇德 6年(1634年) 2月 20쪽. "二月戊申諭戶部曰前所定禁煙之令其種者用者屢行申飭近見大臣等猶然用之以致小民效尤不止故行開禁凡欲用煙者惟許各人自種而用之若出邊貨買者處死"

42) 仁祖實錄. 卷37. 仁祖 16年(1638年) 戊寅 8月 甲午. "심양인 또한 그것을 매우 좋아하였는데, 오랑캐 汗은 토산이 아니며 재화를 소모시킨다고 여겨 명령을 내려 금지하였다고 한다(瀋人亦甚嗜之, 而虜汗以爲, 非土産耗財貨, 下令大禁云)."

그 수요가 급증하여 고가로 거래되었고, 조선으로의 심각한 은 유출을 초래했던 것이다.

반면 조선으로서는 담배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물이었다. 일본산 고급 담배를 중개무역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었고, 병자호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중에 포로송환을 위한 대가로서 은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43] 즉 조선이 경제적 측면의 금연령을 반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와 같은 경제·외교적 실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은 유출로 인한 고가의 담배수입을 막기 위해 청은 자국내의 금연령 이외에도 조선의 무역사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조선에도 엄격한 금연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의 금연령은 이렇다할 실적으로 올리지는 못했고, 스스로 금연령을 해제하고 말았다. 대신 청으로서는 은 유출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었으므로, 담배의 자유매매는 허용하되, 담배가격의 평가절하를 통해 은 유출 문제를 완화하려고 했다.[44]

이를 통해 볼 때, 대외무역에서 담배는 고가의 상업작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담배 1斤의 가격이 은 1兩으로[45] 중국에서는 은 1兩 2錢 혹은 은 1兩 3錢에 거래되고 있었다.[46] 중국에서 쌀 1石이 대략 은 2-3兩 정도였으므로[47] 담배 가격이 매우 비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이 조선에서의 국내가격의 70%나 절하된 은 3錢에 거래하려고 하였으니, 청이 느끼던 경제적 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담배 도입 초기에 국내에서 은가(銀價)로 거래되고 있음은 『하멜표류기』나 「담바귀타령」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17세기 전반 고가의 일본산 고급 담배를 피우는 것은 상류 양반층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서민들은 그와 같이 비싼 담배를 어떻게 피울 수 있었을까?

이수광이 "지금 사람들은 담바고를 많이 심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17세기초부터 일반서민들은 고급 담배는 아니더라도 자급자족의 형태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그 점은 임진왜란 이후 담배전래 직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담바귀타령」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래(東萊) 울산(蔚山)의 담바귀야
은(銀)을 주려 왔으냐, 금(金)이나 주려고 왔느냐
은(銀)도 없고 금(金)도 없어, 담바귀 씨를 갖이고 왔네
저기저기 저 산(山) 밑에, 담바귀 씨를 솔솔이 뿌려
낮이면 태양(太陽)을 받고, 밤이나 되면 찬

43) 포로송환을 위한 贖還貿易, 몽고산 소의 수입, 燕京使行에 따른 담배무역의 급증에 대해서는 朴容玉. 같은 논문. 1966 : 제3절 남초의 대외무역을 참조.
44) 瀋陽狀啓 辛巳(仁祖 19年) 1641年 6月 25日. "금후로 담배를 가진 자는 수색하지 말고, 담배 1근을 銀 3錢으로 절하하여 정한 일은 황제의 분부에 의한 것이다(今後南草持來者, 勿爲搜驗, 而南草一斤, 價銀三錢, 折定事, 皇帝分付)."
45) 備邊司謄錄. 8冊. 仁祖 22年(1644年) 10월 23일
46) 葉夢珠 撰. 閱世編. 卷7 種植. 臺北 ; 木鐸出版社, 1982 : 167쪽.
47) 明 崇禎 3年(1631年) 白米 1石이 銀 1兩정도였는데, 계속되는 은가 하락으로 銀 5兩까지 폭등했는데, 白米 1石에 평균 銀 2-3兩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葉夢珠 撰. 閱世編. 卷7 食貨 一. 臺北 ; 木鐸出版社, 1982 : 153쪽.

이슬 마져
무성(茂盛)하게 잘 자란 후에, 속이나 속닢은 다 제쳐 놓고
속의 속대 베혀다가, 청동화로(靑銅火爐) 백탄(白炭) 불을
피어 놓고 한태 하며, 세상사(世上事)를 둔떠 보아라[48]

「담바귀타령」은 담배의 일본 전래와 담배의 은가 거래의 근거를 말할 때 활용되는 자료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은가로 담배를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담배 씨를 구해서 가까운 주변에 씨를 뿌려 길러서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이다. 즉 일반 서민들은 고가의 수입담배를 구입해서 피운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의 형태로 담배를 피웠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상조건이나 토양 등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담배재배가 가능하며,[49] 산지와 품종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담배는 품종과 재배조건에 따라, 같은 수확물이라도 보존방법에 따라 품질이 많이 달랐다. 이는 무역용으로 고급담배만을 생산하는 경우라도 자가소비용 담배 즉 저가의 담배 역시 별도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7세기 중반 상품생산을 위한 담배경작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주곡생산지를 잠식해 나가기 이전에도 자급자족적인 차원의 경작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담배무역의 활성화로 일반인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졌다.

이와 같이 담배의 전래와 함께 국내외의 담배소비량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었고, 중개무역만으로는 국외 소비량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청과의 무역이 확대되고 내수용 담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품 판매를 위한 담배의 경작면적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18세기에 들어서면 담배수요가 증가하여 경작면적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다. 1732년 부승지(副承旨) 이귀휴(李龜休)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臣이 30년 전에 호남을 왕래할 때에 담배를 재배하는 밭을 보니 울타리 밑의 빈터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 1730년에 敬差官으로서 호남을 왕래하면서 보니 담배를 경작하는 곳이 모두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고, 長水, 鎭安 같은 邑은 한 지역의 토지가 거의 담배밭이 되었습니다. 신이 보지 못한 海島 등과 같은 곳도 역시 섬 전체에 담배를 심는다고 합니다.[50]

전라도 진안(鎭安)은 18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고급 담배의 생산지였으며, 평안도 삼등(三登)은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고급 담배 생산지로 그 품질은 전라도 등지의 것을 능가하여 서초(西草)·향초(香草)로 불리웠다. 진안과 삼등의 담배는 왜지삼과 함께 청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고,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는 고급담배를 생산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51]

또한 담배 재배기술과 가공기술이 발전함에

48) 성경린·장사훈 편. 조선의 민요. 서울 ; 국제음악민요사, 1949 : 232 – 233쪽.
49) 南基桓 外. 新制 煙草學. 서울 ; 鄕文社, 1976 : 53 – 59쪽.
50) 承政院日記 747冊. 英祖 8年(1732年) 7월 21일 ; 增補文獻備考 卷147. 田賦考 7. "臣於三十年前, 往來湖南時, 見南草所種之田, 則不過籬底隙地而已, 其後庚戌年, 以敬差官往復湖南見之, 則所耕處, 皆是膏玉良田, 至如長水鎭安等邑, 一境之土, 幾盡種南草, 臣所未見處, 亦海島等地, 亦皆全一島種之云."
51) 李永鶴. 같은 논문. 1990 : 20 – 29쪽.

따라 17세기 중엽이후 담배유통을 전담했던 엽초전(葉草廛)과 절초전(折草廛)이 등장하여 담배의 독점적 이익을 두고 갈등하였고, 18세기 전반에 엽초전의 독점으로 대립이 종결되었다. 18세기 중반이후로는 사상(私商)의 등장으로 시전(市廛)의 독점은 점차 와해되어 가는 추세였다.[52] 심지어 일부 지식층에서는 질 좋은 고급담배를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기도 하였으나[53] 18세기 중반에는 "담배 1把(다발)에 8－9푼에 불과하다"[54]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여 흡연인구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와 같이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조선에서의 담배산업은 재배와 유통면에서도 급속한 성장을 거두었고, 경작면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담배무역과 유통으로 인한 사회문제, 경작면적의 확대에 따른 위기의식 등 조선정부도 국내적 차원에서 담배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주목하였고, 수 차례의 금연령을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금연령이 주로 은 유출을 막기 위해 담배거래와 흡연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연령이었던 데 반해, 조선의 금연령은 대상과 사안에 따라 담배거래, 담배재배 혹은 흡연행위를 막는 부분적 조치였다. 조선의 금연령을 좀더 세분하면 정치·외교적, 경제적, 사회적[55]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조선의 금연령은 청의 무역마찰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청은 금연령을 반포하여 은의 유출을 막는 한편, 조선 무역상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선정부에 대해서도 금연령을 엄격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식적 차원에서는 담배 밀무역에 관여한 조정관리에 대해서는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하여 파면 등의 조치가 따랐지만,[56] 담배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청과의 외교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57] 따라서 청이 요구했던 수준의 금연령에 대한 태도는 정치·외교적 수사에 그쳤을 것이다.

18세기 경작면적의 확대에 따라 조선정부 내에서는 금연논쟁은 주곡생산지의 담배생산지로의 변모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즉 경작면적이 확대되면서 곡식을 재배하는 비옥한 토지가 담배 재배지로 바뀌는 것을 우려하며, 담배 재배 자체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각종 금연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대세는 막을 수 없어, 18세기말 이후로는 비옥한 토지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도 제시되었다.[58]

52) 위의 논문：41－44쪽.

53)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1801년 유배지에서 英陽지방의 고급 담배를 심어나는 "그 돈으로 金絲酒를 사마시며 일년을 잘 보내세"라고 했던 「長　農歌十章」이라는 詩가 있다(丁若鏞 著. 朴錫武 편역. 哀絶陽. 서울 ; 시인사, 1983：88쪽). 固城 지역의 殘班 출신이었던 구상덕(具尙德:1706－1761)은 그의 일기 『勝聰明錄(1725－1761)』에서 자신이 봄에 담배를 사 두었다가 1把당 3文의 이윤을 남겼다고 진술했다(具尙德 著. 國學振興硏究事業 推進委員會 編. 勝聰明錄：18世紀 固城縣의 農家日記. 城南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67쪽. 1727年 5月 11日).

54) 具尙德 著. 같은 책. 1995：577쪽. 1752年 12月 30日.

55) 朝鮮의 禁烟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회적 측면의 禁烟令이었다. 이것은 朝鮮의 흡연문화의 형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4장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56) 仁祖實錄. 仁祖 17年(1639年) 3月 22日 己卯.

57) 仁祖實錄. 仁祖 20年(1642年) 10月 28日 乙丑 ; 仁祖實錄. 仁祖 24年(1646年) 2月 4日 辛巳.

이처럼 관찬사료에는 경제적 측면의 금연령이 언제 어떻게 행해졌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내의 금연 상소는 18세기 전 시기에 걸쳐 줄기차게 주장되고 있었고,[59] 민간에서는 금연령으로 인해서 초래된 담배가격 폭등의 기회 등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취했던 경우[60]가 있었던 것처럼 금연령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대외경제에서 차지하는 담배의 지위로 인하여 청과 같이 사형에 처할 정도의 엄격한 금연령이 실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내에서 담배경작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금연령을 반포해야 할 정도로 흡연인구가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었다.

2) 흡연의 효능과 폐해논쟁

담배가 약초로서 인식되었던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담배도입의 초기 전파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동아시아 삼국에서는 그 효능과 폐해가 일찍부터 인식되고 있었다.[61]

그런데 흡연인구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흡연의 효능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이고, 지역에 따라 흡연의 효능에 대해 유행했던 관념도 크게 달랐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남방의 경우 흡연이 풍토병을 예방해 준다는 관념이 유행했고, 북방의 경우는 추위를 막아준다는 관념이 유행했다.

흡연이 풍토병을 막아준다는 생각은 1613년 『露書』에 제시되어 있는데,[62] 1637년 『景岳全書』에서는 윈난(雲南) 정벌시 풍토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흡연했던 한 병영만이 무사하여, 그로 인해 남방지역에는 흡연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63]

반면 북방지역에서는 흡연이 추위를 막아준다는 생각이 크게 유행하였다. 17세기말 저작으로 추정되는 예멍쥬(葉夢珠 : 17세기초 – 17세기말)의 『閱世編』에서는 화북지역의 농민반란

58) 李永鶴. 같은 논문. 1990 : 54 – 60쪽.

59) 承政院日記. 446책. 肅宗 35年(1709年) 1月 15日. 副護軍 李尙建疏 ; 承政院日記. 601책. 英祖 1年(1725年) 9月 24日. 前萬戶 李泰培疏 ; 承政院日記. 747책. 英祖 8年(1732年) 7月 21日. 幼學 李周翊疏 ; 承政院日記. 771책. 英祖 10年(1734年) 1月 11日. 學諭 全義采疏 등 李永鶴이 (李永鶴. 같은 논문. 1990 ; 56쪽 註137) 제시한 것 외에 18세기 중반과 후반까지 금연 상소는 지속되고 있다. 英祖實錄. 英祖 10年(1734年) 11月 5日 丙子. 尹志遠疏 ; 英祖實錄. 英祖 24年(1748年) 4月 30日 癸未. 學諭 全義采疏 ; 正祖實錄. 正祖 21年(1797年) 7月 8日 乙亥. 李秉模疏 ; 正祖實錄. 正祖 22年(1798年) 11月 30日 己丑. 裵宜疏, 卜台鎭疏, 尹在陽疏, 金萬疏, 柳鎭穆疏.

60) 具尙德 著. 같은 책. 1995 : 604쪽. 1754年 閏 4月 16日.

61) 일본에서는 1603년 袋中上人의 『琉球往來』에서 흡연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鈴木達也. 같은 책. 1999 : 68쪽), 조선에서는 1614년 李 光의 『芝峰類說』에서는 흡연의 효능을 열거함과 동시에 "독이 있으니 경솔히 쓰지 말라(然有毒不可輕試也)"고 경고했다(李 光 著. 남만성 譯. 芝峰類說(下). 서울 ; 을유문화사, 1994 : 「食品部 : 藥」 630쪽). 중국 醫書인 『本草彙言(1645)』에서는 담배를 毒草로 분류하였고 담배의 유독성도 지적하였다(鈴木達也. 같은 책. 1999 : 73쪽).

62) 註15) 참고.

63) 張介賓 撰. 景岳全書.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卷48. 「本草正 · 草部」 1190쪽. "이 물건은 고래로 들어보지 못하였다. 근래 明 萬曆 시기에 福建과 廣東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吳楚 지역에 씨를 뿌린다. 그런데 결국은 복건지역에서 나는 색깔이 연한 황색이며 질이 세밀한 金絲烟이라는 것만 못한데, 힘이 강하고 氣가 넘쳐 우수하다. 그것을 피운 습속의 기원을 들으니, 雲南 정벌시에 군대가 풍

군[64]에서 흡연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흡연의 효능으로 추위와 습기를 막아준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65] 아울러 그 책은 청군 내부에서도 흡연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청군에서 흡연이 만연했던 이유는 추위와 추위로 인한 한질(寒疾)의 발병과 관계가 있다. 당시 청군은 입관(入關 : 중국동북지역에서 수도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산하이관(山海關)에 들어선다는 뜻)하기 전으로 만주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66] 매년 맞이해야 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추위방지와 한질의 치료를 위해 흡연의 효능이 청군의 인기를 끌었다.[67] 심지어 한질을 치료하기 위해 말 1필을 주고 담배 1근을 사 피울 정도였고, 결국 한질의 치료를 위해 금연령도 해제될 수 밖에 없었다.[68]

토병이 있는 지역에 깊이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유독 한 병영만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 까닭을 물으니 그들 무리만이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서남쪽에도 老少를 불문하고 朝夕으로 끊임없이 피운다(此物自古未聞也. 近自我明萬曆時始於 廣之間, 自後吳楚間皆種植之矣, 然總不若 中者色微黃質細, 名爲金絲者, 力强氣勝爲優也. 求其習服之始, 則向以征 之役, 師旅深入 地, 無不染病, 獨一營安然無恙, 問其所以, 則衆皆服烟. 由是遍傳. 今則西南一方, 無分老幼, 朝夕不能間矣)."

64) 여기서 지목하고 있는 流寇는 명말의 농민반란군을 의미한다. 명말의 유구세력이 陝西, 山西, 山東, 河南 등 화북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내용은 「吳 . 晩明"流寇"之社會背景. 吳 選集. 天津 ; 天津人民出版社, 1988」을 참고.

65) 葉夢珠 撰. 閱世編. 卷7 種植. 臺北 ; 木鐸出版社, 1982 : 167쪽. "담뱃잎은 처음에 복건지방에서 나왔다고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여러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복건의 담배는 그것을 피우면 사람이 취하게 되어 乾酒라 불리웠고 이 곳(현 上海지역)에 끊이지 않게 되었다. 明末 崇禎帝 말년 邑城에 彭氏 성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 씨앗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지 알지 못해, 本地에서 씨를 뿌려 그 잎을 채취하였고, 음지에 말렸다. 드디어는 그것을 가공하는 업자가 생겨 실모양으로 잘게 썰어 멀리 나가 판매하였으나 土人들은 아직 감히 맛을 볼 수 없었다. 후에 엄격한 금연령을 내렸는데, 流寇(농민반란군)는 담배를 피워 추위와 습기를 물리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민간에서 재배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고, 상인들은 판매할 수 없었다. 멀리서 파종의 죄를 물으니, 팽씨가 가장 먼저 고발당해 어찌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담배파종이 드디어 끊기게 되었다. 淸 順治初에 軍士 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한 때 담배를 파는 자가 한꺼번에 몰렸고, 재배하는 자도 다시 많아졌는데 이윤이 배가 남았다. 처음에는 1斤에 1兩2錢, 1兩3錢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가격이 낮아져, 현재에는 1斤에 1錢2分 혹은 1錢 3分으로 더러 錢으로 거래될 뿐으로 이 지경에 이르자 재배하는 자가 드물게 되었다(烟葉, 其初亦出 中. 予幼聞諸先大父云.. 福建有烟, 吸之可以醉人, 號曰乾酒, 然而此地絶無也. 崇禎之季, 邑城有彭姓者, 不知其從何所得種, 種之於本地, 採其葉, 陰乾之, 遂有工其事者, 細切爲絲, 爲遠客販去, 土人猶未敢嘗也. 後奉上臺頒示嚴禁, 謂流寇食之, 用 寒濕, 民間不許種植, 商賈不得販賣, 遠者與通番等罪, 彭遂爲首告, 幾致不測, 種烟遂絶. 順治初, 軍中莫不用烟, 一時販者輻輳, 種者復廣, 獲利亦培, 初價每斤一兩二三錢, 其後已漸減. 今價每斤不過一錢二三分, 或僅錢許, 此地種者鮮矣)."

66) 淸 太祖 누르하치는 1616년 국호를 後金, 연호를 天命이라 하였고, 이를 계승한 淸 太宗 홍타이지는 1636년 後金을 大淸으로 바꾸고, 연호를 崇德이라 하였는데, 1644년 李自成의 반란 이전까지는 만주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67) 『淸經世文編』에서는 서북방에서 흡연이 추위를 막아준다고 했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 담배재배가 경지의 60-70%를 소모하고 있다. 원래 담배는 서북변경에서 나온 것으로 추위를 몰아낼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동남 쪽에도 퍼져 흡연자들에게는 추위 혹은 더위에 상관하지 않고 피우고 있다(今則煙草之植, 耗地十之六七, 原煙出自西北邊外, 謂可以驅寒耳. 今則遍於東南, 飮煙者無間暑寒)." 賀長齡. 淸經世文編. 卷三十六. 戶政十一農政上. 論 省務本節用書. 郭起元. 이밖에도 『本草綱目遺拾』에서도 북방에서는 추위를 막아준다고 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에서도 흡연이 추위를 막아준다는 관념이 흡연의 효능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612년 마테우스 드 쿠로스의 서한에서 이점을 지적하였고,[69] 조선에서는 1760년 이익(李瀷 : 1681－1763)의 『星湖僿說』 등에서 담배의 유익함 중의 하나로 추위를 막아준다는 점을 들었다.[70]

이처럼 흡연이 추위를 막아준다는 생각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조선을 거쳐 중국의 동북지역에 이르기까지 위도상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매년 추위와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했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중국측의 사료가 흡연의 효능 중 유행했던 관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조선측의 사료로는 어떤 관념이 유행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더욱이 동아시아에서 의서(醫書)의 유통이 쌍방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71]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1637년 쟝졔빈(張介賓 : 1563－1640)의 『景岳全書』와 같이 일찍부터 의서에 담배의 효능과 폐해를 언급하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강명길(康命吉 : 1737－1800)의 『濟衆新編』이 등장하는 18세기말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가능했다.[72] 그 조차도 『景岳全書』의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었다.[73]

68) 王逋. 蚓庵 語. 叢書集成續編. 第96冊: 子部. 上海 ; 上海書店, 1994 : 904쪽. "담뱃잎은 복건에서 나온 것인데, 변경인들은 이것이 아니면 寒疾을 치료할 수 없다한다. 山海關 바깥 사람들은 심지어 말 1필로 담배 1근을 바꾸고 있다. 崇禎帝 16년(1644年) 금연령을 내려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심는 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은 가볍고 이윤은 무거우니 백성들이 그 조칙을 받들리 없다. 이윽고 위반자는 참수한다는 령을 내렸으나 오래지 않아 변경군대에서 寒疾을 치료할 수 없어 결국에는 금령을 그만두게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담배가 어떤 물건인지 몰랐으나 崇禎 말년에는 내가 있는 浙江 嘉興에서도 두루 심었으며, 이척 동자라도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풍속이 갑작스레 바뀌었다(烟葉出自 中邊上人寒疾非此不治關外人至以匹馬易烟一 崇禎癸未下禁烟之令民間私種者問徒法輕利重民不奉詔尋令犯者斬然不久因邊軍病寒無治遂停是禁予兒時尙不識烟爲何物崇禎末我地 處栽種雖二尺童子莫不食烟俗頓改)."

69) 이 점은 1612년 마테우스 드 쿠로스(Matheus de Couros, S. J.)의 서한에서 지적되고 있다. 鈴木達也. 같은 책. 1999 : 226쪽.

70) 註 88) 참고.

71) 예컨대 리스쩐의 『本草綱目』은 1593년 초판본이 발행된 이래, 일본에서는 17세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으나(李經緯 主編. 中外醫學交流史. 長沙 ; 湖南教育出版社, 1998 : 176－196쪽), 조선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였다(三木榮 著. 補訂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 思文閣出版, 1963 : 359쪽).

72) 최근에 허준이 『東醫寶鑑』에서 담배에 관한 언급을 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출처는 김홍경의 『동양의학혁명』(서울 ; 신농백초, 2000 : 422－423쪽)과 『건강으로 가는 주역탐구』(서울 ; 신농백초, 1997 : 60－61쪽)였다. 전자의 책에서는 「허준의 담배론」이라는 장까지 따로 다루면서 『東醫寶鑑』이 담배를 언급했고 주장했고, 후자에서는 허준이 담배를 언급했다는 사실과 『濟衆新編』에 나온다는 모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김홍경이 인용한 기사는 1799년 康命吉의 『濟衆新編』「藥性歌 · 煙草」의 기사를 인용했던 1885년 黃度淵의 『方藥合編』의 기사이다. 김홍경 측은 e－mail을 통해 담배에 관한 언급이 『東醫寶鑑』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느라 『東醫寶鑑』 운운했다는 어이없는 답신을 보내왔다. 더욱이 『濟衆新編』의 기사는 중국의 『景岳全書』의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古人의 지혜'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73) 張介賓 撰. 景岳全書.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卷48. 「本草正 · 草部」 1189－1190쪽. "담배 : 맛이 맵고 氣가 덥다. 성질은 미열이고, 升하며, 陽氣이다. 연기를 태워 마시는데 많으면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다. 때로 한 모금 혹은 두 모금 피우는데, 만약 자주 들이키면 취하여 넘어지고 오래 지나, 후에 소생한다. 심한 자는 냉수 한 모금으로 풀면 곧 깨어난다. 만약 답답하면 백설탕으로 풀면 곧 편안해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흡연의 효능으로 유행했던 관념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유행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처럼 흡연의 효능에 대해서 언급했던 의서 등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74] 더구나 18세기말까지 조선 지식층의 흡연의 효능에 대한 인식에서 중국 의서 등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것이 당대의 조선에서 유행했던 관념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

조선의 의서에서 흡연의 효능과 폐해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담배가 토산이 아닌 오랑캐에게서 들어온 수입품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던 것인데,[75] 흡연의 효능과 폐해에 대한 의학적인 논쟁은 의서가 아니더라도 의학적 지식수준이 높았던 유학자들의 흡연의 효능과 폐해에 대한 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유학자들의 흡연의 효능과 폐해 논쟁을 살펴보는데 있어, 기존 논의처럼 단순히 대립적 논쟁의 한편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 혹은 반대했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흡연에 대한 인식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즉 기존 논의에서는 장유나 정조가 애연론자였고 이익은 흡연에 비판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 방식으로는 흡연에 대한 어떤 관념이 유행했는지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흡연의 효능과 폐해 논쟁을 흡연인구의 확대과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흡연에 대한 인식론적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목되는 것이 양생(養生)론적 관점에서 본 흡연인식이다. 즉 지식층들에게 담배는 도입초기부터 약초로서

지니 또한 기이한 물건이다. (중략) 겉을 치료하는데 있어, 일체의 陰邪와 寒毒, 산바람과 풍토병, 風濕이 살결을 사사로이 막는 것, 근육과 뼈의 통증 등을 잘 몰아내어, 진실로 얼마간 효력을 낼 수 있는 신비스런 약제이다. 안을 치료하는데 있어, 胃氣를 왕성하게 하여, 소화를 진척시키고, 陰氣의 혼탁함과 寒氣의 막힘을 제거하고, 속이 더부룩한 것과 전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구토와 딸꾹질, 급성 위장병을 멈추게 하며, 쌓여있는 諸蟲을 제거하고, 울결을 해소시키며 통증을 멈추게 하며, 기를 잘 통하게 하여 피가 뭉치는 것을 막고, 모두 아래로 떨어지고 뒤로 추락하여, 上焦·中焦·下焦를 잘 통하게 하여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이 물건은 속성이 純陽이어서 잘 통하고 잘 흩어지며, 음기가 막힌 경우에 신비한 효능을 발휘한다. 만약 양기가 성해서 기가 넘치며 燥와 火가 많으면 許短에 이른고, 땀이 많은 자는 마땅히 써서는 안된다(烟：味辛氣溫, 性微熱, 升也, 陽也. 燒烟吸之, 大能醉人, 用時惟吸一口或二口, 若多吸之, 令人醉倒, 久而, 後甦, 甚者以冷水一口解之卽醒., 若見煩悶, 但用白糖解之卽安, 亦奇物也. (중략) 用以治表, 善逐一切陰邪寒毒, 山嵐 氣, 風濕邪閉 理, 筋骨疼痛, 誠頃刻取效之神劑也. 用以治裏, 善壯胃氣, 進飮食, 陰濁寒滯, 消膨脹宿食, 止嘔 亂, 除積聚諸蟲, 解鬱結, 止疼痛, 行氣停血瘀, 擧下陷後墜, 通達三焦, 立刻見效. (중략) 然此物性屬純陽, 善行善散, 惟陰滯者用之如神, 若陽盛氣越而多躁多火, 及氣許短而多汗者, 皆不宜用)." 康命吉 著. 濟衆新編. 卷八 藥性新增. 서울 ; 通文館, 1968：162쪽. 「藥性歌·毒草」"담배는 맵고 덥다. 氣를 몰아내고 痰을 치료하며, 寒毒과 風濕을 낫게 하고, 벌레를 죽인다. 순전한 陽氣여서 잘 통하고 잘 흩어지며, 陰氣가 막힐 때 신비한 효능을 발휘한다. 만약 陽氣가 盛해서 氣가 넘치고 燥와 火가 많으면 기가 허하게 되고, 땀이 많은 자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 더러 많이 피워서 취해 넘어지면 냉수 한 모금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만약 가슴이 답답하면 백사탕으로 풀 수 있다(煙草辛熱逐 治痰寒毒風濕殺蟲 堪, 純陽善行善散用於陰滯神效若陽盛氣越而多燥多火及氣虛多汗者不宜或多吸醉倒冷水一口解之卽醒若煩悶者用白糖解之)."

74) 중국의 경우 흡연의 효능으로 유행했던 관념은 1637년 『景岳全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본적 내용은 註 73)의 『濟衆新編』의 내용과 일치한다.

75) 張維. 같은 책. 1975：274－275쪽. "그 풀은 본초 여러 책에는 보이지 않아 그 性氣와 주요 효능을 알 수 없다. (중략) 세상에서 담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오랑캐에서 나와 본초에 실리지 않은 것을 그 구실로 삼는다(其草不見於本草諸書, 未知性氣及主治 (중략) 世之攻南草者以出於蠻夷非本草所載爲口實)."

인식되고 있었고, 약초는 개인적 수양의 핵심이었던 양생을 돕던 수단이었기 때문에 흡연을 양생론적 인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생은 고대 중국에서 神仙이 되기 위한 道家의 수련법으로 정신수양(精神修養 : 內丹法)과 복약(服藥 : 外丹法)이라는 구체적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많으나 특히 복약의 연구는 전통 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었다.[76] 이러한 양생법은 개인적 수양의 필요에서 유학자들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식층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는 개인적 수양 방법과 유학의 사상적 기초로서 모색되고 있었다.[77]

그 대표적인 것이 기(氣)에 대한 이해이다. 기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원으로 인간 활동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기의 균형이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기를 길러낼 필요가 있었다.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를 보양하여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었고 유학자들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질병이 걸렸을 때는 복약을 통해 기의 잘못된 흐름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었다.

흡연의 효능 역시 기의 흐름을 조절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氣의 흐름과 관련한 유학자들의 인식은 흡연이 "氣를 내려준다(下氣)" 거나 "막힌 氣를 해산시킨다(散滯氣)"는 인식이었다. 기를 내려준다는 인식은 1614년 이수광의 『芝峰類說』[78]과 18세기 후반 정조(正祖 : 1752 – 1800)의 『日得錄』[79]에 보이고, 기를 해산시킨다는 인식은 1635년 장유의 『谿谷漫筆』에서 발견된다.

내가 묻기를 "이 물건이 燥하고 熱이 있어

76) Paul U. Unschuld. Medicine in China : A History of Ideas. Berkeley, L. A., London ; Univ. of Calif. Press, 1985 : 111 – 116쪽.

77) 유학자들의 의학인식이 양생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은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 일지사, 2000 : 2장 3절의 "유학자들의 의학론과 양생론"을 참고.

78) 李 光 著. 남만성 譯. 芝峰類說(下). 서울 ; 을유문화사, 1994 : 「食品部 : 藥」 630쪽. "淡婆姑라는 것은 풀이름이다. 또한 이것은 南靈草라고도 한다. 근래에 와서 倭國에서 나는데, 잎을 따서 바싹 말리고 불에 태운 것을 병든 사람이 대통으로 그 연기를 빨았다가 곧 도로 내뿜는다. 그 연기는 콧구멍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淡과 습기를 잘 없애고 氣를 내리며, 또 술을 깨게 한다.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심어, 그 법을 쓰고 있는데, 매우 효험이 있다. 그러나 독도 있으니 경솔히 쓰지 말 것이다. 혹은 전하기를 "南蠻國 여인 중에 淡婆姑라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가래 끓는 병을 앓았다. 그러던 것이 이 풀을 먹고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지은 것이다."라고 했다(淡婆姑草名亦號南靈草, 近歲始出倭國採葉暴乾以火熱之, 病人用竹筒吸其煙旋卽噴之其煙從鼻孔出最能 痰濕下氣且能醒酒. 今人多種之用其效甚法, 然有毒不可輕試也, 或傳南蠻國有女人淡婆姑者, 患痰疾積年服此草得 故名)."

79) 正祖 著. 『弘齋全書』 17. 178卷. 서울 ; 民族文化推進會, 1998 : 『日得錄』 104쪽. "담배가 사람에게 유익한 점은 더위를 당해서는 더위를 씻어주는데 이는 氣가 스스로 하강하여 더위가 스스로 물러가게 된 것이고, 추위를 당해서는 추위를 막아주는데 이는 침이 스스로 따뜻해져 추위가 저절로 막아지게 된 것이다. 식사 후에는 이것에 의지하여 음식을 소화시키고, 변을 볼 때는 능히 악취를 좇게 하고, 자고 싶으나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이것을 피우면 잠이 오게 된다. 심지어는 시를 짓거나 문장을 엮을 때,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리고 고요히 靜坐할 때 등의 경우에도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점이 없다. 옛 사람으로는 오직 張維만이 이러한 담배의 맛을 조금 알았다(南草之益於人, 當暑滌暑, 氣自降, 故暑自退, 當寒禦寒, 涎自溫, 故寒自防, 飯後賴以消食, 便時能使 臭, 欲睡而睡未至, 吸此則睡來, 以至吟詩做文與人語及靜坐時, 無不有益於人者, 古人惟張新豊, 稍解此趣味者)."

서 반드시 肺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찌 능히 코를 치료하겠는가" 하였더니, 朱가 가로되 "滯氣를 능히 해산시키는 까닭이다." 했는데, 그 말도 또한 일리가 있다.[80]

붉은 코(赤鼻)를 치료해 준다는 것 역시 화기(火氣)인 담배연기가 체내를 돌아 기를 해산시켜 준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장유는 이러한 양생론에 근거하여 흡연이 누구에게나 효용이 있는 것도 아니며 화기라는 기본 성격 때문에 건조하고 열이 있어 폐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양생론에 기초하여 가장 많이 유행했던 관념은 무엇이었을까?

17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흡연의 효능은 흡연이 기를 내려준다는 양생론에 근거하여 "소화를 돕는다"거나 "가래나 담을 없애준다"는 인식이었다.[81] 흡연의 효능이 소화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은 특히 조선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조선에서는 식사 후에 담배참을 갖는 시간이 길었고,[82] 아이들의 배앓이에도 사용되었다.[83]

그렇다면 왜 소화와 관련된 담배의 효능이 유행했을까? 그것은 민간에서는 평상시뿐만 아니라 구황시에 먹는 뽕나무 열매, 도토리 열매, 소나무껍질, 토란 등 소화가 문제가 될 때 적당한 처방이 없었고, 또 양생론적 관점에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차(茶)가 그다지 유행하지 못했던 점,[84] 하층계급으로 갈수록 소화기질환이 많았던 점[85]이 그 단서가 될 것이다.

그밖에도 흡연이 추위를 막아준다거나 구충(驅蟲)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86]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양생론적 관점에서 흡연이 기를 내려준다는 인식하에서는 추위를 막아준다는 것보다는 더위를 씻어준다는 인식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위를 막아준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담배 자체는 화기라는 인식을 통해서 가능했다. 즉 양생론적 관점에서 흡연의 효능은 처음에는 기를 내려준다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점차 담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기라는 특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7세기 전반 중국이

80) 張維 著. 金喆熙 譯. 谿谷漫筆. 서울 ; 乙酉文化社, 1974 : 274 – 275쪽. "余問此物燥熱必傷肺何能治鼻朱曰能散滯氣故耳其言亦有理"

81) 흡연이 가래를 없애고 소화를 시킨다는 인식은 일반 民間 뿐만 아니라 官에서도 공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谿谷漫筆(1635年) ; 仁祖實錄. 仁祖 16年(1638年) 8月 4日 甲午 ; 星湖僿說(1760年) ; 士小節(1775年) ; 日得錄(18세기말) ; 純祖實錄. 純祖8年(1808年) 11月 19日 庚辰.

82) 19세기 후반 민간의 식후 담배참은 무려 2시간 30분이나 되었고, 조정에서도 "담배 한번 피울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正祖實錄. 正祖 24年(1800年) 6月 26日 丁丑. "臣等之入來已久, 而自上就寢矣. 上曰, 其間稍久乎, 時秀曰, 已過一吸烟頃矣."

83) 본고의 4장 2절을 참고.

84) 養生論의 관점에서 茶 역시 氣를 내려줘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했다. 김호. 같은 책. 2000 : 172쪽.

85) 신동원은 조선농촌의 질병 양상 중에서 소화기 질환의 경우 하층계급으로 갈수록 많다고 지적한다. 신동원. 조선사람의 생로병사. 서울 ; 한겨레출판사, 2000 : 137 – 140쪽.

86) 李德懋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靑莊館全書 6. 서울 : 솔출판사, 1997 ; 《靑莊館全書》71卷 32冊은 正祖 19年(1795年) 李德懋의 아들 李光葵에 의해 편집·출판되었는데, 《靑莊館全書》卷27·28·29 〈士小節·第五 士典. 事物〉 38쪽에 "흡연을 즐기는 자들은 걸핏하면 蟲痰을 낫게 한다고 말한다(嗜烟者動必曰可已蟲痰)"는 구절이 있다.

나 일본에서 유행했던 추위를 막아준다는 관념은 적어도 조선의 지식층에서는 보다 후대에 유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7세기 전반 장유가 흡연의 효능으로 "추울 때는 능히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는 능히 서늘하게 할 수 있다"는 관념을 비웃었던 반면,[87] 18세기 후반의 정조는 이를 논리적인 모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흡연의 효능에 대한 인식은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고, 지식층에서 흡연의 폐해가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흡연이 소화에 도움이 되고 구충에 효과가 있으며 추위를 막아준다는 등의 인식이 크게 호소력을 가졌을 것이다. 즉 흡연의 효능에 대한 인식이 흡연인구의 대중적 확산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식층의 흡연에 대한 양생론적 인식론의 특성은 단순히 흡연에 대한 찬반이 아닌 그 효능과 폐해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 그 점은 흡연의 효능과 폐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대표하는 이익에게서도 나타났다. 그는 1760년『星湖僿說』에서 흡연의 5가지 유익함과 10가지 폐해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어떤 이가 太湖 先生(이익 자신을 가리킴)에게 묻기를, "지금 유행하는 이 담배란 물건이 사람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라고 하자, 태호 선생이 답하기를 "담배는 가래가 목구멍에 붙어서 아무리 뱉어도 나오지 않을 때 유익하며, 비위가 거슬려 구역질이 날 때 유익하며,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돼 누울 수 없을 때 유익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체해 신물이 올라올 때 유익하며, 한겨울 추위를 막는데 유익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또 묻기를 "그러면 담배는 사람에게 유익하기만 하고 해는 없습니까?"라고 하여, 태호 선생이 답하기를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심합니다. 안으로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 귀와 눈을 해칩니다. 담배연기를 쐬면 머리카락이 희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가 빠지며, 살이 깎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노쇠하게 합니다. 내가 이 담배에 대해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은, 냄새가 독해 齋戒하면서 神明과 통할 수 없는 것이 첫째이고, 재물을 축내는 것이 둘째이며,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걱정인데, 요즘 사람들은 상하노소를 막론하고 일년 내내 하루종일 담배 구하기에 급급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이 셋째입니다.[88]

얼핏 보면 이익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논했기 때문에, 흡연의 보건상의 폐해를 강도 높게 인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익은 기본적으로 양생론적 관점에서 흡연의 효능과 폐해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다. 단지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흡연의

87) 張維 著. 金喆熙 譯. 같은 책. 1974 : 275쪽. "지금 세상에 담배를 즐기는 자도 또한 배고플 때 능히 배부르게 하고, 배부를 때 능히 시장하게 하며, 추울 때는 능히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는 능히 서늘하게 한다하니 그 칭찬하는 것이 빈랑이라는 열매와 아주 같은 바, 또한 한번 웃을 만하다(今世嗜南草者亦言飢能使之飽飽能使之飢寒能使之煖熱能使之凉其稱之絶類檳 亦可一笑)."

88) 李瀷. 최석기 옮김. 星湖僿說. 서울 ; 한길사, 1999 : 92쪽. 「南草」"南草之盛行, 自光海末年始也. 世傳, 南海中洋, 有湛巴國, 此草所從來, 故俗稱湛巴云. 有問於太湖先生曰, 今之南草, 益乎曰, 痰在喉, 不出則益, 氣逆而涎潮則益, 食不消而妨臥則益, 上焦停飮而吐酸則益, 隆冬禦寒則益, 曰益而無害乎, 曰害尤甚, 內害精神, 外害耳目, 髮得之而白, 面得而蒼, 齒得之而凋, 肉得之而削, 令人能老, 余謂害尤有甚焉者, 臭惡不得齋戒而交神一也. 耗財二也. 世間固患多事, 人無上下老少, 終歲終日, 役役不得休三也. 若移此心力, 爲學則必至於大賢, 爲文則成章, 治産則致富矣. 易曰上六冥升, 利于不息之貞."

보건상의 폐해가 아니라 흡연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있었다. 이는 담배소비가 농민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고, 담배 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등 실학자들의 경세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서 독특한 내용은 "담배냄새가 독해 齋戒하면서 神明과 통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흡연문제를 제례(祭禮)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신성시되는 제례에서 흡연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흡연과 제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제례에서 흡연행위가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 역시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흡연인구의 확대과정에서 형성된 흡연문화의 성립 계기에 관한 논의를 점검해 보고, 흡연문화의 형성에서 국가권력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양반사회와 서민사회의 일상에서 나타난 흡연의 양상과 흡연문화가 흡연인구의 확대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4. 흡연문화의 형성과 국가권력

1) 양반사회의 흡연문화와 제례

담배가 초기에 약초로서 인식되었지만, 기호품으로 인식된 것도 비교적 이른 시기였다. 즉 담배의 대중적 확산과 함께 접대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담배 도입 초기에 담배가 고가였던 만큼 기호품으로 자리잡았던 것은 양반사회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한데, 17세기 중반의 『하멜표류기』의 기록 역시 이 점을 잘 암시하고 있다.

> 商人 및 잘사는 市民들은 대개 저택 옆에 창고 하나씩을 가져, 거기에 화물을 저장하고 담배와 술로 친구를 대접한다.[89]

담배가 淸과의 무역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외교용으로도 사용된 만큼 국내외적으로 양반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증거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관직을 얻기 위해 담배를 뇌물로 사용하거나[90] 반란을 모의하기 위해서 담배를 구한다는 빌미를 이용하여 비밀회합을 갖기도 하였다.[91]

그런데 양반사회의 흡연문화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이른바 "담뱃대의 길이가 신분에 비례한다"는 말처럼, 조선사회의 흡연문화는 담배가 일찍 유입되었던 중국이나 日本과 달리 男女, 少長, 貴賤의 구별이 엄격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흡연문화는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이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흡연문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견해이다.

박지원(朴趾源 : 1737－1805)은 18세기 후반 『熱河日記』에서, 차별이 엄격한 흡연문화가 형성된 이유는 독한 연기를 뿜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不恭할 뿐만 아니라 장죽을 물고 어른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몹시 거만하고 무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92] 19세기

89) 헨드릭 하멜 著. 李丙燾 譯. 같은 책. 1975 : 84쪽.
90) 肅宗實錄. 肅宗 3年(1679年) 3月 12日 丙午.
91) 仁祖實錄. 仁祖 7年(1629年) 7月 11日 辛丑.
92) 朴趾源 著. 李家源 譯. 熱河日記(中). 서울 ; 大洋書籍, 1978 : 46쪽.

중엽 이규경(李圭景 : 1788 – 1865) 역시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남녀노소, 상하존귀에 따른 엄격한 흡연문화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것이 자연발생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中土와 倭人은 담배를 피우는데 上下尊卑와 남녀노소의 분별이 없다. 오직 우리나라는 尊貴한 자 앞에서는 비천한 자가 담배 피우지 못하고 연로한 자 앞에서 연소한 자가 감히 담뱃대를 가로 뻣지 못한다. 남녀가 마찬가지로 그 법이 엄격하며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하고 시키지 않아도 행함인 즉 섬나라 倭가 엄격하지 않게 흡연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능가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삼갈 것도 있고 경계할 것도 있는 즉 이것이 가히 담배의 예의라고 이르겠다.[93]

일제시기의 文一平은 담배가 초기에는 아무 앞에서나 피울 수 있었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口不美'라 하여, 그 모양새가 좋지 않음을 꾸짖자 그 후로는 왕 앞에서는 감히 연기를 피울 수 없었고 장죽을 뻗치는 것은 더욱 무례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위로부터의 처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94]

'자연발생설'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담배 도입 초기에는 흡연에 있어 상하귀천이나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과 흡연하는 그 모양새가 보지 좋지 않아 자연스럽게 차별이 엄격한 흡연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은 양반사회 내부에서 흡연행위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흡연문화의 형성에 있어 강제성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예절과 규범이 엄격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한 해명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오종록은 자연발생설과는 달리 차별이 엄격한 흡연문화의 형성 계기를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연결시켰다. 즉 17세기는 양반층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 사회질서의 강화를 도모해 간 시기이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란으로 인한 흔들리는 신분질서와 윤리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점차 흡연행위를 사회적 권위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95] 이러한 '사회요구설'은 양반이라는 흡연문화의 주도층과 신분질서의 유지라는 흡연문화의 형성과정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설에 비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자연발생설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신분제의 동요에 따른 흡연문화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엄격한 흡연문화가 형성된 구체적 계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양반사회의 흡연문화가 형성된 그 구체적 계기로서 국가권력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흡연문화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작동방식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흡연문화의 형성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예는 국가가 주관하는 제례, 궁중과 양반사회의 흡연행위에 대한 대응 등에서 나타난다.

우선 국가권력이 흡연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용했던 곳은 국가적 상징체계의

93) 李圭景 編著. 五洲衍文長箋散稿(下). 서울 ; 明文堂, 1982 : 107 – 108쪽. "中土與倭人吃烟無上下尊貴老少男女之分, 惟我國尊貴之前卑賤不敢吃烟, 烟長老之前年少不敢橫管, 男女同然其法截嚴不爲敎而然不令而行則大勝於島倭之慢稱烟僮也, 其中有戒有箴則是可謂烟禮者也."

94) 文一平. 같은 글. 1939 : 405쪽.

95) 오종록. 같은 글. 1996 : 264쪽.

대표적 형태인 제례에서였다. 조선시대의 제례는 가족, 사회,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례는 국가통합의 중요한 행사였다. 그 중에서도 기우제, 사직단 제례 등은 국가만이 주관할 수 있었다. 『朝鮮王朝實錄』에서의 이와 관련한 제례만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여덟 차례 반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6] 따라서 이익의 『星湖僿說』에서 흡연의 폐해 중의 하나로 흡연이 제례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그 자신만의 독특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피력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례에서 흡연을 금지했다는 것은 이미 신성한 국가적 의례에까지 흡연사례가 만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례에서는 경건성을 중시하는 하나의 단계로 몸가짐을 단정히하는 재계(齋戒)를 중시해왔다. 그런데 흡연은 화재로 인해 재실(齋室)의 보존에 위협[97]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성한 국가제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엄격히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98]

그 후 국가제례에서 흡연을 금하는 금연령이 지속적으로 반포되었고, 흡연으로 인한 경제상의 폐해를 지적하는 관료들의 상소가 계속 이어지면서[99] 담배 매매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연령이 계속 반포되어야 할 정도로 금연령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담배가격의 앙등을 초래하였다. 이에 개인적으로 애연가였던 정조는[100] 금연령을 반포했던 같은 해에 국가제례시에 흡연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조처를 단행했다.

> "매양 祈雨祭를 지낼 때마다 허다한 하속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하였으나 도리어 시끄러운 단서만 야기되었는데, 더구나 사람들이 각기 기호하는 것이 있어 매양 재개하는 날을 당하여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먼저 흉중에 있으니 이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을 정제하는 방도가 아니다. 이 뒤로는 단지 술만을 금하게 하라"[101]

그렇다면 정조대에는 제례에서 흡연이 인정되고, 흡연문화에 대한 국가적 통제는 포기된 것일까?

국가권력이 국가제례 이외에 흡연문화에 개입하게 되는 또다른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양반사회에서 흡연행위 자체가 어떻게 비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흡연행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권력과 양반사회가 흡연문화에 개입하고 그를 주도하는 폭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96) 肅宗實錄. 肅宗 7年(1681年) 5月 15日 丁卯 ; 肅宗 18年(1692年) 2月 27日 丁未 ; 肅宗 27年(1701年) 5월 12日 戊戌 ; 肅宗 30年(1704年) 5月 20日 戊午 ; 肅宗 46年(1720年) 肅宗大王 行狀 41집 110쪽 ; 英祖實錄. 英祖 3年(1727年) 7月 23日 丁丑 ; 英祖 47年(1771年) 5月 1日 辛丑 ; 正祖實錄. 正祖 1年(1777年) 4月 24日 己未.

97) 실제로 齋室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화한 예가 있었는데, 재실 부근에서 禁烟令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肅宗實錄. 肅宗 18年(1692年) 2月 27日 丁未.

98) 肅宗實錄. 肅宗 5年(1679年) 7月 12日 甲辰.

99) 註 59) 참고.

100) 正祖는 개인적으로 흡연 예찬론자였다. 그의 흡연론은 자신의 수상록인 『日得錄』에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은 註 79)을 참고.

101) 正祖實錄. 正祖 1년(1777年) 5月 5日 己巳. "而每於禱雨之時, 輒以許多下屬之禁草, 反致紛撓之端, 人各有所嗜每當齋日, 欲飮之心, 先着胸中, 不特役心之端, 亦非心齋之道. 此後只令禁酒."

새로운 문화의 소재로서 담배는 양반사회 내부에서 사교의 대명사였으나 흡연행위 자체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방만한 양태의 표상이었다. "담배를 피워 동료를 태만히 대한다"[102]든지 "국사는 논하지 않고 담배나 몇 대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103]는 것이 그것이다. 더욱이 17세기 중반 어느 조정 대신은 청 조정의 조회광경을 보고하면서, 흡연행위를 매우 태만한 광경으로 묘사하였다.

> 보통 때에는 반열이 많지 않았으나, 왕후를 책봉하고 하례를 드릴 때에 서 있는 자들이 만명에 가까웠습니다. 拜禮와 叩頭 등은 가지런하여 볼만하였으나 마음대로 포근하게 앉기도 하고 담배를 마구 피우기도 하였습니다.[104]

그런데 무엇보다 흡연행위가 문제시되었던 것은 흡연하는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국가제례는 물론, 궁중에서도 흡연행위가 적발되었고, 과거시험장 안에서도 담배가 팔리고 있었다.[105] 상황이 이러한 정도에 이르다보니, 무분별한 흡연행위에 대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

정조는 개인적으로 흡연에 우호적이었고, 국가제례시의 흡연을 인정하는 등 관대한 흡연정책을 펼쳤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조대는 사회문화적 번영과 신분질서의 동요 속에서 사회질서를 재건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조10년(1786년) 궐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왕의 친위부대장인 금군장(禁軍將)을 귀양을 보낸 사건은[106] 우연히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흡연정책의 모순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흡연인구가 확대되는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흡연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며 국가권력에 대한 직접적 도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의사를 분명히 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반들도 흡연의 예절을 정하여 양반사회의 내재적 규범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정조대의 이덕무(李德懋:1741－1793)는 『士小節』을 지어 양반층, 여성,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절과 수신의 규범을 기록하였다. 그는 양반이 흡연할 때 지켜야 할 항목들을 자세하게 나열하였고,[107] 특히 여성과 아동의 흡연에 대해 매우 혐오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국가권력과 양반사회의 흡연문화의 주도권을 둘러싼 구체적인 예는 이른바 '金觀淳·金

102) 仁祖實錄. 仁祖 17年(1639年) 7月 9日 甲子. "掌令洪茂續啓曰, 掌令趙重呂, 於本府坐起之日, 在坐飮烟草, 對同僚有怠慢之禮."

103) 英祖實錄. 英祖 51年(1775年) 7月 9日 甲寅. "備局日會不聞軍國務惟是烟茶數竹而歸."

104) 玄宗改修實錄. 玄宗 7年(1666年) 9月 20日 丁酉. "常時則班行不多而冊后賀禮時序立者可近萬拜禮叩頭等事整濟可觀而但任意平坐或亂吸南草矣."

105) 英祖實錄. 英祖 49年(1773年) 4月 9日 丁酉.

106) 正祖實錄. 正祖 10年(1786年) 2月 21日 乙未.

107) 李德懋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靑莊館全書 6. 서울 ; 솔출판사, 1997 : 『靑莊館全書』 卷27·28·29「士小節·第五 士典. 事物」 37－38쪽. "담배를 피울 때 등불에다 불을 붙임으로 해서 재가 기름에 떨어지게 해서도 안되고, 담배통에 담배를 많이 쟁여 화로에 떨어져 연기가 나게 해서도 안되고, 반쯤 피우고 그대로 요강에 떨어뜨려도 안되고, 담배침을 벽이나 화로에 뱉아도 안되고, 이불 속에서나 책들 사이에서나 음식상 곁에서 담뱃대를 물어서도 안되고, 환자의 방에서 문을 닫고 잔뜩 피워서도 안된다(吸烟草不可延火於燈灰墮爐烟爆不可半 仍投于溺器不可潑烟涎于壁間爐中不可含烟盃于衾褥書帙飯者之間不可於病人之室閉戶滿吸)"

炳星 흡연사건(1790년)'에서 잘 드러난다. 김관순과 김병성은 명망있는 유생이었는데, 대낮 돈의문 안 길가에서 홑옷바람으로 담뱃대를 가로물고 있었다. 이 때 좌의정(左議政) 채제공(蔡濟恭:1720－1799)과 대동한 권두(權頭)가 이를 보고 담뱃대를 빼라고 호령하자 담뱃대를 물고 있던 김관순이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자를 보고 담뱃대를 빼겠는가?"하였다. 이에 권두는 하인을 시켜 이들을 전옥서(典獄署)에 감금하였고, 채제공은 다음날 석방하려 하였는데, 일이 뜻밖에 커져버렸다. 다음날 새벽 유생들이 그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전옥서 관리를 죽이겠다면서 집단 항거에 나섰기 때문이었다.[108]

국가권력이 화재, 제례, 매매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금연령을 내리긴 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 양반의 흡연행위 자체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일대 중대 사건이었다. 유생들은 김관순과 김병성의 감금을 유생들의 흡연행위에 대한 직접적 탄압으로 간주했다. 결국 사건이 확대되어 엄격하게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병성의 부친인 돈령부(敦寧府) 참봉(參奉) 김세근(金世根)이 직접 찾아와 자체 해결할 뜻을 보이면서 석방되었는데, 김세근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의 볼기를 쳤고, 김관순 역시 집안에서 추궁을 당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흡연사건을 양반사회의 자율에 맡기게 한 채제공의 일처리에는 만족을 표시했지만, 유생들의 집단항거는 국가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종신토록 과거(科擧)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귀양보내거나, 군역에 충당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 사건은 흡연행위가 국가권력의 직접적 통제와 양반사회 자체의 자율적 통제의 타협 속에서 규정되는 중요한 표지이다. 더욱이 정조대에는 제례에서 흡연행위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적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흡연문화를 주도하게 된 양반사회는 단지 그 규범을 양반사회에만 한정한 것은 아니었다. '김관순·김병성 흡연사건'에서처럼 양반을 징계하는데 하인들을 불러들여 수치심을 자극하는 한편, 흡연에 있어 규율을 일반 서민에까지 확대할 뜻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흡연의 사회적 규범이 구체화되고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엄격한 흡연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 구체적 예가 18세기 후반 박지원의 제자였던 유득공(柳得恭:1749－?)의 『京都雜志』에서 보인다. 이 저작은 당시 서울의 문물제도와 풍속을 논한 것으로 정조대의 저작으로 추정되는데, 신분에 따른 차별적인 흡연문화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 朝士들은 반드시 煙盒이 있다. 쇠로 만들었는데 매화와 대나무를 은으로 새겼다. 자색의 鹿皮로 끈을 달았는데 烟盃와 더불어 말 뒤에 가지고 다닌다.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 앞에서 감히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朝士들이 거리에 나갈 때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기를 심히 엄하게 한다.[109]

108) 正祖實錄. 正祖 14年(1790年) 5月 22日 壬寅.

109) 柳得恭 著. 京都雜志 (李錫浩 譯. 東國歲時記(外). 서울 ; 乙酉文化社, 1969 : 296쪽). "朝士必有烟盒鐵鑄銀鈿梅竹紫鹿皮綬幷烟盃携在馬後卑賤在尊貴之前不敢吸烟朝士出街　除含烟者甚嚴."

이처럼 흡연문화는 국가권력의 개입과 양반사회의 자율적 규제에 의해 신분에 따른 차별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양반 앞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었고 같은 신분이라도 연장자 앞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분,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엄격한 흡연문화는 성리학적 규범의 강화와 예학연구 등이 활발해진 17세기에 완성되었다기 보다는 18세기 신분제적 질서의 동요 속에서 국가권력과 양반사회의 개입에 의해 오히려 강화되어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서민의 일상생활과 흡연중독

1884－1885년까지 주조선(駐朝鮮) 영국영사를 지냈던 윌리엄 칼즈(William R. Carles : 1848－1929)는 서울, 함경도, 평안도 지방에 관한 풍물지를 기록했다. 그가 담배에 관한 보고를 주안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쪽의 책에 담배에 관련된 언급만 총 40회가 넘고 흡연관련 그림만도 5장이나 포함하였다.[110] 이 책은 사료상의 제한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흡연문화를 우회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에 의하면 19세기 후반에는 노점과 가게에서 담배, 담뱃대, 담배 쌈지, 부싯돌 등을 여러 군데서 팔았으며, 노점상 중에서는 "담배와 담뱃대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있었다"[111]고 한다. 흡연이 일상화되면서 문간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는 남성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112] 조선인들은 식사 후에도 오랜 시간을 담배 피우는 데 할애했다.[113] 서민사회에서도 흡연은 사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 낯선 이방인과의 거리를 메우는 데도 사용되었으며,[114] 장기, 바둑, 투전, 골패 등 각종 놀이와 놀음에 빼놓을 수 없는 소품이었다(그림 5, 6).

이와 같이 담배가 서민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데에는 담배가 양반사회에서처럼 단순히 사교나 풍류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서민사회에서 담배는 노동의 시작과 중간에 '담배참'이라는 것이 존재할 정도로[115] 일상의 노동에 따른 휴식의 의미가 컸다(그림 7, 8). 또한 돈이나 곡물보다도 담배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처럼,[116] 상품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신분에 따른 흡연의 위계질서는 엄격해서, 흡연행위 자체가 신분상의 권위를 나타내고, 담배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흡연에 필요한 각종 기구 등도 신분의 차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즉 담뱃대의 길이와 신분의 고저가

110) 그의 책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19세기 후반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풍속화가인 箕山 金俊根이다. 흥미롭게도 독일 함부르크에 소장되어 있는 김준근의 79폭의 그림 중 20폭 넘게 담뱃대가 등장하고 있다. 김준근의 그림은 조흥윤 · 게르노트 프루너 지음. 箕山風俗圖帖. 서울 : 범양사, 1984를 참고.

111) William R. Carles. Life in Corea. London ; Macmillan and Co, 1888 : 38쪽. 번역본으로 (신복룡 역주. 조선풍물지 : 한말외국인기록 16. 서울 ; 집문당, 1999)을 참고.

112) 위의 책. 1888 ; 119쪽.

113) 식사 후 담배참이 2시간 30분이나 되었는데, 칼즈는 3주가 지난 후에야 여행을 재촉하기 위해 그 시간을 1시간 15분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진술했다. 위의 책 : 124－125쪽.

114) 위의 책 : 70쪽.

115) 오종록. 같은 글. 1996 : 267－268쪽.

116) William R. Carles. 같은 책. 1888 : 2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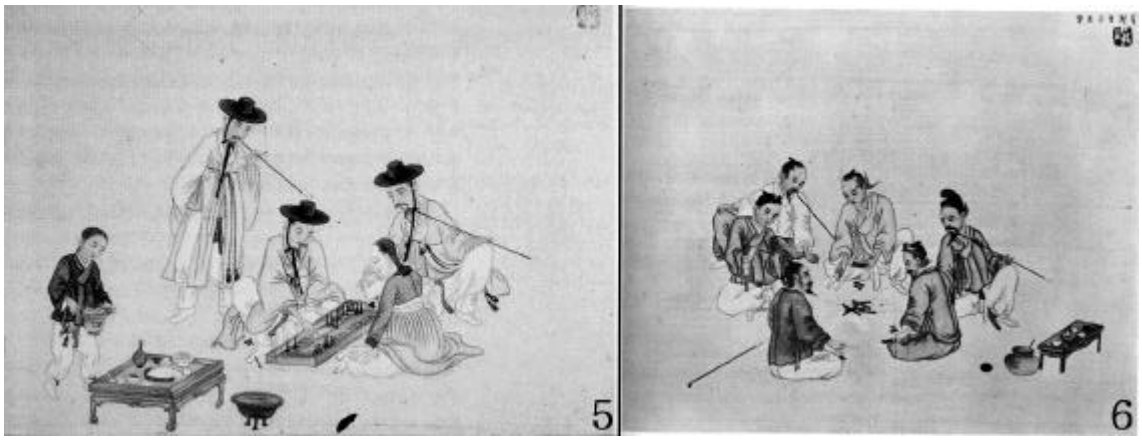

그림 5. 김준근. 쌍육치는 모습 : 쌍육은 2개의 주사위와 15개의 말을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 기생과 양반이 신중하게 말을 놓고 있다. 주위의 양반들이 장죽을 물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조흥윤 · 게르노트 프루너 지음. 箕山風俗圖帖. 서울 : 범양사, 1984 : 79쪽).

그림 6. 김준근. 투전 : 투전은 서민들이 애용하던 도박으로 투전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담뱃대도 내팽겨두고 있고, 구경꾼들만이 담뱃대를 물고 있다. 이 밖에도 김준근의 그림에는 장기, 바둑, 골패, 투호놀이 등 각종 놀이에 담뱃대가 등장한다(정병모 지음. 한국의 풍속화. 서울 : 한길아트, 2000 : 59쪽).

비례했던 것이다. 담뱃대는 담배를 담아 불태우는 담배통(烟盃), 입에 무는 부위인 물부리, 담배통과 물부리를 연결하는 설대(혹은 長竿)으로 구성된다. 설대가 긴 것을 장죽이라 하고, 설대가 없거나 짧은 것을 곰방대라고 불렀다.

18세기 풍속화에서 양반은 장죽은 일반서민은 곰방대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담배가 처음 일본으로부터 들여왔을 때부터 절초(折草)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담뱃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초기에 어떤 양식이 유행했는지는 분명치 않다.[117] 분명한 것은 장죽의 경우 일본의 담뱃대에 비해 훨씬 가늘고 길었으며, 담배통도 작았다는 점이다. 1m가 넘는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담뱃잎을 보관하는 연합(烟盒) 혹은 연대(烟袋), 재떨이(灰取器), 연로(烟爐) 등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하인을 거느릴 수 있는 양반과 양반문화의 일원인 기생만이 이러한 호사를 즐길 수 있었다. 더욱이 담뱃대와 연합 등에 금은 장식으로 상감을 입혀 부와 신분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서민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곰방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담배 자체의 질이 달랐다.[118]

뿐만 아니라 맞담배는 할 수 없어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입에서 입으로 담뱃대가 전해졌다.[119] 그래도 이와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흡연행위에

117) 오종록은 일본에서 들여온 담뱃대가 담배통도 작고 설대도 작다고 주장하나(오종록. 같은 글. 1996 : 265쪽) 17세기초 일본의 풍속화에는 담배통이 크고 설대가 긴 담뱃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鈴木達也. 같은 책. 1999 : 115 – 116쪽의 그림 참조.

118) William R. Carles. 같은 책. 1888 : 131 – 132쪽.

그림 7. 김득신. 짚신삼기 : 노인의 앙상한 골격과 그림의 배경인 풍성한 호박덩쿨이 대조를 이루며 서민들의 담배피는 모습에서 그들의 삶의 체취를 느끼게 한다. 서민들은 노동하던 사이사이에 주로 설대가 짧은 곰방대를 즐겼다(정병모 지음. 한국의 풍속화. 서울 : 한길아트, 2000 : 360쪽).

그림 8. 김준근. 농부점심 : 일반서민들에게 담배참은 식사참과 함께 휴식을 의미했다. 앞쪽 왼쪽편에 보이는 사람은 등쪽에 곰방대를 꽂아둔 채 식사하고 있고, 앞쪽 오른편에 보이는 사람 앞에도 곰방대가 놓여져 있다(조흥윤 · 게르노트 프루너 지음. 箕山風俗圖帖. 서울 : 범양사, 1984 : 183쪽).

우호적인 경우였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엄격하게 금해졌다(그림 9).

> 그들(관청의 하속들 : 역자주)은 말에서 내려 내가 지나갈 때까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내 앞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100야드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담뱃대를 치워라"며 호통을 쳤고, 거의 400야드가 떨어진 곳에서 말을 타고 있던 사람에게도 멈추게 했다.[120]

이처럼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엄격한 흡연문화는 국가권력의 말단을 차지하는 관청의 하속들에 의해 유지되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상급자가 고귀한 신분임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별적인 흡연문화로 인해 흡연인구가 위축되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가장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여성이다. 16세기 이래 『朱子家禮』등의 유교적 규범이 확대되고 가부장적 질서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여성에 대한 사회규범이 강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양반문화의 일원인 기생층은 여기에서 배제되었을 것이지만, 양가집 규수들의 흡연에 대한 일반 양반층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18세기 후반의 이덕무는 「婦儀」를 지어 흡연이 부덕(婦德)을 해치고, 정결치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 담배를 피우는 것은 婦德을 크게 해치는 일이니, 정결한 버릇이 아니다. 그것은 담배냄새

119) 위의 책 : 62쪽.
120) 위의 책 : 216 – 2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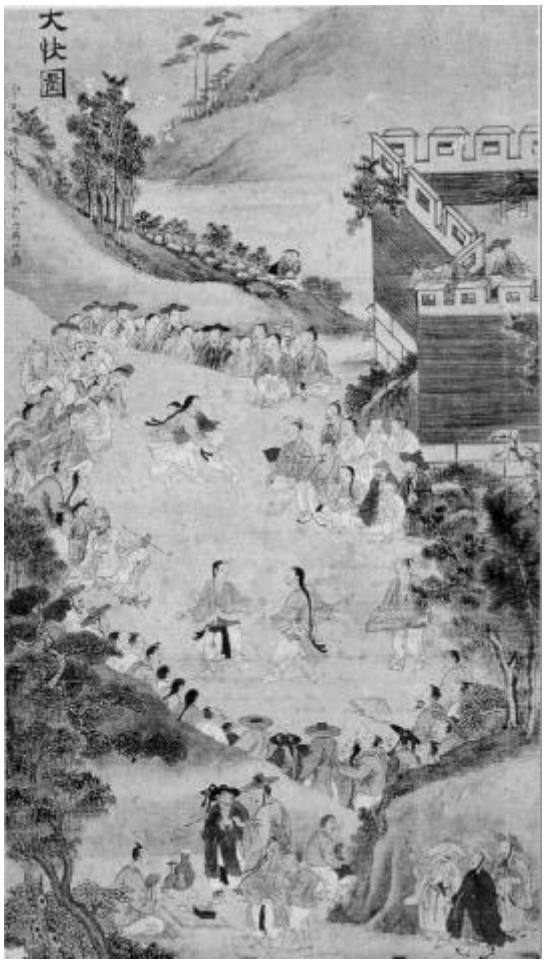

그림 9. 유숙(劉淑 : 1823 – 1873). 대쾌도(大快圖) : 좌측 상단에 곰방대를 물고 있는 서민이 양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하단에는 곰방대보다는 조금 긴 담뱃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우측에 장죽을 물고 있는 사람은 양반인 듯하다. 실제로 노소와 사농공상이 함께 자유롭게 노는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을까? 그림 좌측 상단의 대쾌도라는 표제 아래에는 "丙午萬花方暢時, 擊壤世人, 寫於康衢煙月(1846년 꽃들이 만발한 봄날,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사람이 태평한 풍경을 그리다)"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즉 이 그림은 사실의 묘사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노닐고 맞담배질 할 수 있는 이상화된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정병모 지음. 한국의 풍속화. 서울 : 한길아트, 2000 : 398쪽).

에 훈습되면 흐르는 침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담배가루가 음식에 한번 떨어지면 다 된 음식 전체를 죄다 버려야 하니, 어찌 부인이 가까이할 물건이겠는가? 그래서 계집종이 담배 피우는 도구를 가지고 가마 뒤에 따르는 것을 볼 때마다 밉살스럽다.[121]

조선시대에 흡연여성이 받아야 했던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여성의 흡연이 양성화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적하듯이 18세기 후반에도 여성흡연이 만연하였고, 위의 기사가 반증하듯이 양반 여성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몸종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반 서민 앞에서 흡연은 오히려 자유로웠다(그림 10). 이처럼 차별이 엄격한 흡연문화 자체는 흡연인구의 증가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분에 따라 흡연공간을 제한시켰을 뿐이었다.

오히려 흡연문화가 정착되면서 흡연인구를 양산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동흡연에 있었다. 담배 도입 시기부터 아동흡연이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많이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아동흡연이 조장된 것일까?

첫 번째는 흡연의 효능과 관련된 것이다. 아동[122]에게도 흡연이 장려되었던 것은[123] 흡연이

121) 李德懋 著. 같은 책. 1997 : 『青莊館全書』 卷30 「士小節 · 第七 婦儀二. 事物」 58쪽. "吸烟大害婦德非精潔之習也以其長襲 臭唾津不收故也且烟屑一涉飮食全烹盡棄豈婦人之所可近也常惡轎後婢子持煙具而隨之也."

122) 서구에서 아동 개념은 17 – 18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근대적 개념으로, 노동을 해서는 안되고 교육만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계층을 의미했다. 그 이전의 전통사회의 아동은 경제적 의존성을 지닌 '성인의 축

그림 10. 김준근. 한 여성의 나들이 : 이 여성이 기생인지 양반층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특수한 신분의 여성은 흡연상의 제약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William R. Carles. Life in Corea. London ; Mac- millan and Co, 1888 : 142쪽).

소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신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담배 도입 초기부터 인식되었던 다양한 흡연의 효능은 소화 뿐 만 아니라 추위를 막아준다든지 구충작용까지 있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도 흡연의 효능이 인정되어 체하거나 소화가 안될 때 아동에게 담배를 피우게 했다.[124]

두 번째는 조선사회의 조혼(早婚) 풍속과 관련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에 『經國大典』에서 남녀의 결혼연령을 남성 15세, 여성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수 차례 조혼금지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조혼이 만연하고 있었다. 조선사회의 조혼의 유행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고려말의 몽고공녀(蒙古貢女)의 압박과 조선의 왕가간택(王家揀擇)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에 기인한다.[125] 조선시대의 조혼의 양상을 통계적으로 나타낼 자료는 없으나 조혼풍속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일제시기에도 조혼자는 법정결혼연령(남 17세, 여 15세) 중에서 7.1%, 6.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126]

그런데 아동흡연은 조선시대의 사회적 풍속과 관련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결혼하면서 상투를 틀면 성년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흡연행위는 상투와 함께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아동흡연

소판'에 불과했다(Valerie Polakow Suransky 著. 윤종희 · 이재연 譯. 아동기의 실종. 서울 ; 교보문고, 1992 : 제1장 아동기의 개념을 참고). 이는 조선시대 아동흡연이 특별한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될 터인데, 조선시대의 아동은 『經國大典』『東醫寶鑑』『芝峰類說』『默齋日記』 등 16 – 17세기 조선에서 법적, 의학적, 사회적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14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했다.

123) 父兄이 자식들에게 흡연을 권하고 있다는 주장은 18세기 후반의 이덕무의 관찰에서 보인다. 李德懋 著. 같은 책. 1997 : 『靑莊館全書』 卷31 「士小節 · 第八 童規三. 事物」 70쪽. "또한 어른이 매까지 때리며 엄하게 금하는데도 숨어서 몰래 피우고 끝내 고치지 않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아동에게 흡연을 권하는 부형도 있으니 어찌 그리도 추악한가? 담배가 성행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亦有長者切禁以至楚而屛身偸吸竟不悛改亦或有父兄使之勸吸者何其陋也烟草盛行殊非美事也)."

124) 흡연이 배앓이에 효능이 있다는 생각은 20세기 중반 한국사회에도 남아있었다. 김정화 지음. 담배이야기. 서울 ; 지호출판사. 2000 : 88쪽.

125) 金斗憲. 朝鮮의 早婚과 및 그 起源에 對한 一考察. 진단학보 1935 ; 2.

126) 1914년 – 1930년까지의 朝鮮總督府. 調査月報의 통계. 金斗憲. 같은 논문. 1935 : 50 – 51쪽. 金斗憲은 1910년대 후반 자신의 중등학교 시절 전체 학생의 대부분이 기혼자였다고 회상했다. 金斗憲. 같은 논문. 1935 : 58쪽.

을 관찰했던 칼즈는 "13－14세의 결혼한 젊은 남자들은 긴 모자 밑에 상투를 틀고 손에는 담뱃대를 쥐고 도포를 입고 활보하고 다녔으며, 서양의 난봉꾼만큼이나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127]고 묘사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관찰은 그와 같은 흡연으로 이한 사회적 풍속이 얼굴 모양까지 바꿔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단 결혼한 사람들은 전체 생활방식이 바뀐다. 장난도 사라지며, 모든 생각이 담배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3피트나 되는 담뱃대를 빨기 위해 얼굴 근육에 계속적인 긴장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얼굴도 변했다."[128]

이렇게 조선후기 조혼의 만연과 결혼 후 성인임을 나타내는 아동흡연에 대한 사회적 용인은 니코틴 중독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즉 아동흡연은 흡연인구 확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 점을 인식했던 18세기 후반의 이덕무는 아동흡연의 금지를 적극 주장하고, 아동이 담배의 습속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손님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는 것조차 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129] 이와 같이 아동기부터 양성화된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은 담배무역의 활성화와 약효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과 신념 등과 함께 흡연인구를 증가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여성과 아동의 흡연에 대한 보건위생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과 아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기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흡연의 폐해도 논해졌다지만, 이미 단순한 기호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담배를 요초(妖草)라고 불렀던 것도 담배가 유해무익한 줄 알면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130] 18세기에 들어서면 니코틴 중독현상을 보이는 징후[131]가 다수 출현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해진미보다도 담배만을 찾는다는 지적인데,[132]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구호식량을 풀어도 그것을 담배와 바꿀 정도였으니[133] 니코틴 중독자가 많았을 것임을 충분

127) William R. Carles. 같은 책. 1888：40쪽.

128) 위의 책：196쪽.

129) 李德懋 著. 같은 책. 1997：『靑莊館全書』卷27・28・29「士小節・第五 士典. 事物」38쪽. "손님을 대할 때 어린 자녀에게 불을 붙이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로 인해 그것을 좋아하는 습속이 생길까 두렵다(待賓客不可使幼子女吸烟引火以獻恐其因習嗜之也)."

130) 仁祖實錄. 仁祖16년(1638年). 8月4日 甲午.

131) 현대의학에서 중독(addiction)은 약물복용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DSM－Ⅳ 기준에 의하면 ①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려는 욕망이 있다 ② 담배를 얻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③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흡연을 계속한다 등과 같은 것이 세가지 이상일 때 중독이라고 한다. 조선후기 사료가 이 기준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중독의 징후'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니코틴 중독과 진단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같은 책. 2000：51쪽.

132) 朴趾源 著. 李家源 譯. 熱河日記(中). 서울 ; 大洋書籍, 1978：31－54쪽. "먹어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건만 천하의 좋은 밭에 갈아서 利文이 좋은 곡식과 다름이 없고, 부인이며 젖먹이들까지도 즐겨 피우지 않는 이가 없을뿐더러, 그 좋아하는 정도가 개・돼지고기 먹는 것과 같아 차나 밥을 능가하더군요. 쇠끝과 불이 함께 입을 뜸질하니 이 또한 世運이라 하겠죠(非充口飽 , 而天下良田, 利同佳穀, 婦人孺子, 莫不嗜如 , 情逾茶飯, 金火迫口, 是亦一世運也)."

133) 備邊司謄錄. 110冊. 英祖 18年(1741年) 1月 8日. "武兼李東春所啓, 卽今淸南亦云凶荒, 而官家或給米升,

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었을까?

>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리하여 8인 가족이 하루에 소비하는 비용만도 十文錢을 내려가지 않는다. 비록 파산하여 몰락하는 집안이라도 기다렸다가 반드시 늦게라도 얻는다.[134]

18세기 전반 10文錢은 신미(新米) 2升을 구할 수 있는 돈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었다.[135] 그렇다고 해서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이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자체가 담배소비를 억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담배소비를 위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족단위로 담배 소비추세를 진단해야 할 정도로 이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경우에도 담배소비만은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에서 의학적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집단 중독이라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했다. 즉 18세기의 흡연으로 인한 중독의 문제는 아동흡연에서 시작된 개인적 중독이 사회적 중독으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국가권력에 의한 대응방안도 모색되었지만, 정조대에 이미 금연령 시행의 역효과와 국가적 통제의 어려움이 논의되고 있었다.[136] 심지어 보건적 차원의 금연령이 성공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 속칭 이른바 담배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혹은 胃를 調養하는데 이롭기도 하고 혹은 痰을 치료하는 데 긴요하다고 하나, 과연 그런지 모르겠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속습이 이미 고질이 되어 남녀노소를 논할 것 없이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겨우 젖먹이를 면하면 으레 횡죽으로 피우고 있는데, 세상에서 더러 "八珍味는 폐지할 수 있어도 담배는 폐지할 수 없다"하니 비록 금하고자 하나 이유가 없을 따름이다. (중략)
>
> 박종훈이 말하기를, 담배는 금지할 수 있음을 사람들은 모두 말하지만, 신이 일찍이 생각하건대, 禁酒가 어려운 것은 대개 술을 좋아하여 깊이 빠진 자가 많기 때문이며, 담배에 이르러서는 이미 몸에 이익에 없는데도 드러나게

則皆貿草而吸之, 耗費不少, 實爲民間之弊."

134) 承政院日記. 446冊. 肅宗 35年(1709年) 1月15日. "老少男女貴賤上下, 無一人不飮, 故八口之家, 一日所費, 不下十文錢, 雖是敗散傾家, 而期於必得後已."

135) 具尙德 著. 같은 책. 1995 : 35쪽.

136) 正祖實錄. 正祖 21年(1797年) 7月 8日 乙亥. "왕께서 이르기를, "담배밭에 모두 곡식을 심게 하면 몇 만 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이병모가 아뢰기를 "기름진 토지에 다 담배를 심었는데, 西路가 더욱 심하니, 이것이 가장 애석합니다"라고 하였다. 왕께서 이르기를 "일체 금지시킬 수는 없는가"라고 하니, 이병모가 아뢰기를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술을 금지하는 것과는 다르니, 만일 금지하려 하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으나, 신은 삼가 氣數와 상관이 있다고 여깁니다.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돌아갈 적에 軍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처음에는 금지하였으나 軍士의 마음이 변함이 있음을 보고서는 드디어 그 명령을 철회하였다 합니다. 지금 천하에 통행하니 어찌 氣數가 그리 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을까"하였다(上曰種南草之田, 皆令播穀則可得幾許萬石, 秉棋曰, 膏沃之土, 盡種南草, 西路尤甚, 此最可惜, 上曰, 未可一切禁之耶, 秉棋曰, 禁草異於禁酒, 如欲禁之, 似無所難, 而臣則竊以爲有關氣數矣, 淸人之自我國還歸也, 軍中吸草者, 初禁之, 及見軍心有變, 遂撤令云, 今乃通行于天下, 豈非氣數之使然乎)."

좋아하는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만약 법을 엄하게 하여 금지한다면, 죄를 무릅쓰고 금법을 범하는 것이 반드시 酒政보다 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137]

여기에는 담배가 대중적으로 확대되고 중독현상이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서는 흡연이 질병과 사망의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보건적 차원에서 금연령을 반포할 국가적 차원의 명분을 찾지 못했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차원에서 실시한 금연령을 한질을 치료하기 위해 해제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138] 그 결과 국가권력에 의한 보건적 차원의 금연정책은 구체화 될 수 없었고, 담배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조선인은 흡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1876년 개항과 함께 성냥이 들어왔고, 일제와 미제 등 외국산 권련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왔다. 처음에 외국산 담배는 가격이 비싸 상류층에만 한정되었으나 그 시장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에 자극받은 정부내 개화파 인사들과 담배상인들은 1883－1884년에 권련국(卷煙局), 금화연무국(金華煙務局), 연무국(煙務局), 순화국(順和局), 연화연무국(煙花煙務局) 등 담배제조소와 판매소를 설립하여 수입담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139]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도 외세의 간섭 속에서 담배산업의 보호나 국민보건을 위해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1894년 김홍집(金弘集：1842－1896) 정권이 거리에서 담뱃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하면서, 오히려 권련의 수요는 더욱 증가되었다. 1896년 담배의 국가전매를 시작했던 일본은 조선의 담배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판로를 넓혀갔고, 영미 합작회사인 영미담배회사(The British American Tobacco Company)도 1904년 이후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했고, 이후 담배산업은 일제에 의해 주도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1909년부터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기 시작했고, 점차 담배세법의 내용을 강화하면서 1921년 7월 담배전매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담배의 국가전매는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국민보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제의 담배전매가 바로 그러한 전형적이 예였다. 그들은 1920년대에 국가세수의 20%이상을 담배전매에서 징수할 정도로 경제적 착취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5. 결론

17세기초 일본을 통해 담배가 도입된 이래, 조선에서 흡연인구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는 비슷한 시기 신대륙에서 유럽을 거쳐 동아시아에 전래된 고구마, 감자, 옥수수, 호박,

137) 純祖實錄. 純祖 8年(1808年) 11月 19日 庚辰. "俗所謂南草, 未知始於何時, 而或云利於調胃, 或云緊於治痰, 未知其果然, 而至於近來俗習已痼, 無論男女老少, 莫不嗜之, 免孩提例爲橫竹, 世或謂八珍可廢, 南草不可廢, 雖欲禁之而末由也已. (중략) 宗薰曰南草之可禁, 人皆言之, 而臣嘗竊思之, 酒禁之難, 蓋由於沈惑者多也, 至於南草, 旣無利益於身而好著至此, 若嚴法而禁之, 則其冒罪犯禁, 必有甚於酒政矣."

138) 註68) 참고.

139) 이영학. 같은 논문. 1991：127쪽.

토마토 등이 대중적으로 재배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본고는 흡연인구가 급속히 확대되는 원인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경제적 측면이다. 안정적인 담배경작지의 확보는 18세기 이후의 일이라 여겨지지만, 17세기초부터 청-조선-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의 활기 속에서 담배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또 조선은 전국적으로 담배재배가 가능하여 서민들도 자급자족의 형태로 흡연할 수 있었다.

둘째, 보건위생적 측면이다. 흡연의 효능에 대한 인식은 양생론적 관점에서 점차 확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초기의 소화를 촉진한다든지 가래나 담을 없애준다는 인식에서 추위를 막아준다든지 구충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즉 흡연의 효능에 인식이 다양화·확대되면서, 신분, 연령, 성별에 차이가 없이 흡연인구가 급증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이다. 흡연문화의 형성은 단순히 흡연인구가 확대된 결과가 아니라 그를 통해 흡연인구의 안정적인 재생산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흡연을 통해 중독자가 양성화되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조선의 금연령의 성격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금연령이란 흡연인구가 급속한 증가를 배경으로 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에서 실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조선의 금연령이 위반자를 사형에 처했던 淸과 달리 미온적이었던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작면적이 확대되면서, 부분적으로 경제적 측면의 금연령도 실시된 바 있었다.

그러나 보건위생적 차원의 금연령은 중독자의 만연으로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했다. 이것은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서 흡연이 질병과 사망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고,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실시할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일제에 의해 경제적 차원의 국가전매가 실시되면서 국가의 보건적 차원의 흡연통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권력에 의해 금연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된 것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였다. 이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제례에서 흡연이 제례의 신성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제례에서 흡연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18세기 후반에는 국가권력에 의해 이것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흡연문화에 대한 국가권력의 새로운 개입이 시작되었다. 양반사회의 흡연행위 자체를 문제삼기 시작했던 것이다. 흡연인구가 확대되고, 무분별한 흡연행위로 인하여 양반사회 내부에서도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18세기 신분제질서의 동요 속에서 국가권력과 양반사회는 흡연문화에 적극 개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반사회의 흡연문화를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은 서민의 일상생활로 확대되었다. 양반들은 신분,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사회적으로 명시해 흡연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후기의 흡연인구가 확대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담배를 통해 조선인의 일상생활의 단면들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조선에서 차별이 엄격한 흡연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은 국가권력의 개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반 개항과 함께 조선인의 흡연문화 역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외국산 권련과 외국기업들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성냥이 유입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일제의 조선침략 이후,

일제는 식민지 재정을 확보할 필요에서 담배에 대한 조세부과를 실시하고 국가전매를 실시하여 담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대해 나갔다. 이와 같이 20세기를 전후한 새로운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된 흡연문제는 차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색인어 : 흡연문화, 흡연인구, 금연령, 아동흡연

*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도와 후원을 해주신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

The Introduction of Tobacco and the Diffusion of Smoking Culture in Korea

SIHN Kyu-Hwan · SEO Hong-Gwan*

Since its introduction to Korea from Japan at the beginning of the seventeenth century, tobacco became very popular with an amazing rapidity among Koreans. Along with widespread cultivation of tobacco, smoking also became very popular among Koreans, regardless of their classes, ages, and sexes. On the other hand, other imported crops from America via Europe in the same period, like sweet potato, potato, corn and tomato, did not enjoy such popularity in Korea. A long time after their introduction, Koreans began to cultivate these crops. Why did Koreans responded enthusiastically to the newly-imported tobacco? What kind of factors contributed to the rapid transmission of tobacco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causes of rapid diffusion of the smoking population in three aspects. First was economic aspect. The farming of tobacco yielded a profit by selling it to Chinese. The climate and the soil of Korea fit for farming of tobacco. So the farm land of tobacco expanded gradually since 18th century.

Second was medical aspect. At first, many Koreans believed that smoking was helpful to digestion, expectoration, protecting coldness, and exterminating parasites. Afterwards, they believed smoking could encourage vitality and protect diseases. There was no reason of smoking cessation for the people's health in that the hazards of smoking were not well known to the commonage in those days, though a few intellectuals acknowledge its harm.

Third was sociocultural aspect. We could trace the smoking culture of Chosun dynasty through arts, poems, and essays. The making of smoking culture made stable reproduction of smokers generation by generation. Especially, the smoking culture secured juvenile's smoking.

Considering three aspects above, we knows that what reason the Decree of Ban of Smoking(禁烟令) in Korea was not strict in comparison to that of China(Qing Dynasty), in which the violators were executed.

The regulation of smoking by the government failed except controlling in sociocultural aspect. The government reinforced controlling of smoking culture in counteraction to the threat of collapse of the hierarchy of Chosun dynasty in 18th century.

Key Words : smoking culture, smoking population, the Decree of Ban of Smoking, juvenile's smoking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 Medical Ethics, Inje University*